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Development Policy Focus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825 Daewangpangyo-ro, Sih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833, Korea
T. 031-740-0114 F. 82-31-740-0655
<http://www.koica.go.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제 10 호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A Proposal on the Monitoring Indicators
of the Busan Partnership Implementation:
in the Context of KOICA's Perspectives)

저자

임 소 진

現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Email: sjlim@koica.go.kr)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

▶ 주요 연구 실적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과와 한국 ODA의 과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3호. 한국국제협력단. 2011.
- 부산총회의 결과와 KOICA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함의. 국제개발협력 2011년 4호. 한국국제협력단. 2011.
- Western Inspired Paris Declarat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ing Paper No. 4. Manchester: Centre for Organisations in Development. 2011.
- Chinese Aid Policy and Practice in Africa: Issues to Address in Tanzania. Conference Paper. British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0.
- China and Africa: Implications for Advanced Donors. Conference Paper. Association for Heterodox Economics. 2010.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초록	01
Executive Summary	03
1. 서론	09
2.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	11
3. 파리선언의 이행결과와 한계	16
4.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과 세부공약	21
5.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8대 Building Block 이니셔티브 ...	29
6. 연구방법	37
7.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39
8. 부산파트너십 이행 예상지표	45
9.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모니터링 방법	59
10. 결론	74
참고문헌	77

약 어 표

AIMS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원조정보관리시스템
AMP	Aid Management Platform 원조관리플랫폼
BB	Building Block Initiatives 빌딩블럭 이니셔티브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공여국을 뜻함)
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세계은행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OECD DAC 공여국 통계 보고 시스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D	Donor Assistance Database 공여국 원조 데이터베이스
DPRG	Donor-Recipient Partnership Group 공여국-수원국 파트너십 그룹
GPP	Good Practice Paper 모범사례보고서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분쟁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JAS	Joint Assistance Strategies 공동지원전략
JVPS	Joint Venture on Procurement System OECD DAC 조달시스템 조인트벤처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DCs	Least Developing Countries 최빈개도국
LICs	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국
LMI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낮은중소득국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ICs	Middle Income Countries 중소득국
ND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국가개발전략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New Consensus	New Consensus on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효과적 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컨센서스
New Deal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취약국에서의 참여를 위한 뉴딜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BA	Program-Based Approach 프로그램형 접근법
PBIG	Post-Busan Interim Group Post-Busan 임시그룹
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 공공재정관리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십
PSGs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평과구축과 국가재건 목표
QuODA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평가
SWAp	Sector-Wide Approach 분야별접근법
UMICs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높은중소득국

국문초록

국제사회의 MDGs 목표달성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제1차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회담(로마선언), 2005년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파리선언), 2008년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아크라행동강령)에 이어 제4차 개발효과성 고위급회담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부산파트너십)가 2011년 개최되었다. 부산총회에서는 공여국, 다자기관 그리고 수원국 뿐 아니라 의회,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국제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를 포함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하였으며, 원조 뿐 아니라 원조 외 재원을 포함한 개발협력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총회 이후 2012년 6월까지 합의된 국제사회의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개발과정에서 한국정부 및 KOICA의 지표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동시에 한국의 개발협력 관계자 및 KOICA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통해 향후 한국의 부산파트너십 이행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해 정의하고, 파리선언 지표의 한계점 분석 및 부산결과문서와 8대 빌딩블록 이니셔티브 분석, OECD Post-Busan 임시그룹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 관련 회의의 모니터링, 외교부 및 KOICA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지표개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결과문서에 충실하여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별로 글로벌지표와 국가지표를 제안하였다. 글로벌지표의 경우 부산결과문서의 4대 공동원칙별 행동방안을 중심으로 글로벌목표를 정리한 후, 관련된 주요공약을 지표화 하였다. 수원국의 경우 지표의 메뉴화 개념을 도입하여 각 수원국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제안된 지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신흥공여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지표는 선진공여국과 차별하여 별도로 제시하였다.

공여국에 해당하는 지표로는 1) ‘원조비구속성 비율’, 2)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 3)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4) ‘ODA 대비 PPP 참여 비율’, 그리고 5) ‘원조 정보공개 비율’이다. 신흥공여국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만을 글로벌지표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국에 해당하는 글로벌지표로써 1) ‘수원국의 구체적인 NDS 수립’, 2)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3)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4) ‘원조 정보공개 비율’을 설정하였다. 국가지표의 경우,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식공유를 위한 사업제공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을 지표로 설정하여

삼각협력에 있어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신흥공여국과 수원국의 공유와 상호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New Deal을 찬성하는 공여국의 경우 New Deal에 의거한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지원’을 국가지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흥공여국의 경우 1) ‘원조비구속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여부’, 2) ‘수원국 시스템 역량 강화지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3) ‘남남협력에 있어서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원국의 국별 지표로 1) ‘의회 및 시민사회의 국가개발전략 수립과정 참여비율’, 2)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에 재난복원 조치 포함’, 그리고 3) ‘남남협력에서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확대’를 예시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표개발과 함께 모니터링 방법도 제시하였으며, Post-Busan 임시그룹 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을 활용하였다. 즉,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의 동시 이용, 행동변화를 강조한 이행결과 평가, 그리고 파리선언 이행 평가방법을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모니터링 방법에 활용하였다. 국가지표 모니터링 방법은 옵션메뉴를 제시하여 국가별로 가능한 평가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2012년 6월 OECD/UN 공동사무국이 국제사회의 합의된 부산파트너십 지표를 발표한 후에 후속연구를 통해 각 지표별 이행전략 또는 정책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Following three high level forums on aid effectiveness, aid stakeholders gathered at Busan in 2011 to discuss the results of the Paris Declaration (PD)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AAA), and to seek ways to improv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broader scope of actors, such as parliament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Busan Outcome Document (BOD) was endorsed without a definitive set of indicators being put forwar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usan Partnership (BP). Instead,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working together with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to develop the indicators by June 2012.

In the light of thi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the BP implementation indicators and monitoring. In order to develop the BP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PD implementation monitoring results as well as criticisms of the PD indicators, and analyzes the BOD, the Building Block Initiatives, and the Post-Busan Interim Group meetings. While this research proposes both global-level and country-level indicators, it tends to reflect the context of the government of Korea, including its aid agenc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selecting country-level donor indicators.

Given that the BP as well as the PD did not define aid effectiveness,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provide a definition of these concep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ing paradigm of the aid regime: from aid effectiveness to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terms of the indicators of the BP, unlike the PD, this study has proposed global goals which are led by the four shared principles, as shown in the table below. Some indicators have been selectively taken from the PD indicators, while others are new or modified from the PD indicators. With a view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and emerging donors, this paper proposes a ‘menu of indicators’ at the country level so that these countries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s seen in the table below, this study has also developed monitoring methods for the proposed indicators. Some of the monitoring criteria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PD, while others are more qualitative than quantitative. For monitoring criteria, participating countries can benefit from the ‘option of menu’ in the monitoring process.

▶ Proposed Indicators for the Busan Partnership Implementation

Shared Principles	Global Goals	Global Indicators	Country Indicators (Menu of Indicators)
Ownership	Deepening the Democratic Ownership of Developing Count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Developing countries ha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NDSs) [Ratio of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NDSs among Total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 Same as in the PD]	
			(for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of Parliaments and CSOs ▶ Developing countries enhance engagement of parliaments and CSOs in the NDSs decision-making process [Ratio of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promote engagement parliaments and CSOs in the NDSs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Total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Focus on Results	Enhancing Managing for Results	(for donors) Aid is Untied ▶ Donors untie bilateral ODA [Untied bilateral ODA ratio – Same as in the PD]	(for emerging donors) Aid Environment for Untying Aid ▶ Emerging donors change/reform aid system environment for untying ODA [Yes/No]
		(for donors) Support Results-Oriented Frameworks ▶ Donors support enhancing results frameworks [Ratio of the number of monitoring assessments using comprehensive monitoring reports among Total number of aid program monitoring assessments]	

Focus on Results	Enhancing Managing for Results	(for emerging donors) Establish Results-Oriented Frameworks ▶ Emerging donors have transparent and monitorable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s [Yes/No]	
		(for developing countries) Establish Results-Oriented Frameworks ▶ Developing countries have transparent and monitorable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s [World Bank IDA three assessment criteria for comprehensive monitoring framework – Same as in the PD]	
	Strengthening the Country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for Effective Institution Building	(for donors) Support Capacity of Reliable Country System ▶ Donors support capacity building for reliable country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Ratio of the number of donors that participate in joint program for country system capacity building among Total number of joint programs for country system capacity building]	(for emerging donors) Menu 1: Support Capacity of Reliable Country System ▶ Emerging donors support capacity building for reliable country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Ratio of the number of emerging donors that participate in joint program for country system capacity building among Total number of joint programs for country system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 Reliable Country System ▶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 reliable country system [CPIA assessment for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system, and JVPS assessment for public procurement system – Same as in the PD]	Menu 2: Strengthen Reliable Country System ▶ Emerging donors strengthen reliable country system [CPIA assessment for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system, and JVPS assessment for public procurement system – Same as in the PD]
			(for New Deal endorsed donors) Support Capacity Building of Fragile States ▶ Donors support New Deal in fragile states for capacity building [Ratio of the number of donors that have country specific strategy for fragile countries based on the

Focus on Results		New Deal among Total number of donors that endorsed the New Deal] (for developing countries – example) Strengthen Resilience and Reduce Vulnerability ▶ Developing countries integrate resilience to shocks and 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in NDSs [Ratio of the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integrate resilience strategy in NDSs among Total number of vulnerable countries against disaster]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Promoting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for donors) Enh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 Donors enhance PPP in their ODA activities (PPP definition: e.g., More than 50% of contribution is from the private partners per unit program) [Ratio of the private sector contribution within the PPP program among Total amount of ODA disbursement]
		(for donors – Korea example) Facilitate Knowledge Exchange and Peer Learning ▶ Donors provide aid programs for knowledge exchange and support platform for peer learning in Triangular Cooperation (Definition: Donor supports capacity building for knowledge exchange and peer learning of South-South cooperation) [Provide titles and long descriptions of knowledge exchange and peer learning platform support programs] [Also, provide the results of the goals and targets for each program]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for developing countries/emerging donors) Enhance Knowledge Exchange and Peer Learning ▶ Developing countries and emerging donors enhance knowledge exchange and peer learning in South–South Cooperation (Definition of emerging donors: pivotal countries in South–South Cooperation) [Provide titles and long descriptions of knowledge exchange and peer learning platform program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mproving Transparency	(for donors) Publicly Open In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onors publicly open gender sensitive in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open standard for electronic publication [Ratio of the number of donors registered at the IATI among Total number of donors] [Also, Ratio of the number of donors that use data disaggregated by sex among Total number of donors]	
		(for developing countries) Publicly Open In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eveloping countries open gender sensitive inform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open standard for electronic publication [Ratio of the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use electronic publication of AIMS among Total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Also, Ratio of the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use data disaggregated by sex among Total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Transpa- rency and Accounta- bility		(for donors – Korea example) Reduce Aid Fragmentation ▶ Donors reduce aid fragmentation and curb the proliferation of aid channels in developing countries [Ratio of the number of commitments implemented by the Donor–Recipient Partnership Group (DRPG) among Total number of commitments agreed as to be implemented by the DRPG] [Option 1: Use of program–based approach (PBA) ratio – Same as in the PD] [Option 2: Use of joint program ratio] [Option 3: Use of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ratio]
---	--	---

Source: Own Compilation

1. 서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부산총회)는 원조 및 개발효과성을 위한 마지막 고위급회담으로써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가 국제원조체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 국제사회는 부산총회를 맞이하여 ‘원조효과성’의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인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였다. 즉, 국제사회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를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개발효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논의와 뚜렷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국 부산결과문서²⁾에서 개발효과성이란 용어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효과적 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 역시 제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칫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과 과연 부산파트너십을 통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 또는 효과적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공약의 이행을 위한 지표의 개발이 2012년 6월로 연기됨으로써 부산총회는 결국 미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이행 평가지표가 어떠한 형태로 수원국 현장중심의 가벼운 형태(global light, country heavy)³⁾에 충실한 내용으로 개발될 것인가와 파리선언의 지표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및 모니터링 방안의 개발과정에 있으며, 부산총회의 주최국이었던 한국정부 역시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 과정의 참여는 비단 외교통상부(이후, 외교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정부부처와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후 KOICA) 및 유상원조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2003년 제1차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로마선언, 2005년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 그리고 2008년 제3차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에 이어, 부산총회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부산파트너십’이라고 명시한다.

2) 부산결과문서의 원제는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3) 부산총회 이후, global light, country heavy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있었던 바, OECD는 Post-Busan 임시그룹(PBIG) 회의 개최를 앞두고 country heavy 부분을 ‘country focused’로 정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OECD, 2012g). 따라서 본 연구도 이후 country heavy에 해당하는 부분을 country focused로 사용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연구과정에서 한국 개발협력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특히 KOICA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지표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대한 의견을 한국 정부, 나아가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부산파트너십 지표 개발과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KOICA 담당자 및 한국 원조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여 이후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제고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공여국 정부의 이행 의지 부족이었고 (Hyden, 2008; Lim, 2011a), KOICA 내에서는 직원들의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수영 외, 2009; Lim, 2011b). 따라서 본 연구는 KOICA 담당자들 및 한국 원조 관계자들이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산파트너십과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및 이행의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향후 부산파트너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정의 및 각 정의에 실린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파리선언의 결과와 한계점을 재분석하여 파리선언 지표전략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파트너십 지표의 설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 및 결과문서에 담겨 있는 세부공약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부산총회 8대 빌딩블록 이니셔티브(Building Block Initiatives, 이후 BB)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6장에서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제7장에서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개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8장에서 부산파트너십 이행 예상지표를 제안하고, 제9장에서 예상지표별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0장의 결론을 끝으로 지표개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이다.

2.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개최되었으나 개발효과성에 대한 정의없이 회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효과적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비단 부산파트너십 뿐 아니라 파리선언에서도 원조효과성의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상 원조효과성 및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의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발협력 활동의 성과측정이 본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앞서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 및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성 담론은 파리선언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주로 원조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예 : Burnside and Dollar, 1997; World Bank, 1998; Collier and Dollar, 2001; Hansen and Tarp, 2001). 예를 들어, 원조효과성을 ‘개발, 특히 재물의 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원조의 효과(effect)’를 통해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Doucouliagos and Paldam, 2006: 227).

그러나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는 원조효과성 정의는 원조와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원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Bourguignon and Sundberg, 2007). 즉, 원조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 ‘원조와 경제성장’이라는 단순한 접근법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후 DAC)는 원조효과성을 ‘가장 높은 개발 효과(impact)를 담보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activities)의 관리, 전달(delivery) 및 상보성(complementarity) 향상’이라고 보고 있다 (OECD, 2006). 이는 파리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원조전달 메커니즘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조효과성이란 단순히 ‘원조규모와 성장’의 관계가 아닌 ‘원조의 지원방법과 목적이 얼마나 많이 달성되느냐’의 관계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ECD, 2010).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할 때, 파리선언 이후의 담론에서 정의하는 원조효과성이란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원조성과의 최대화’**라고 할 수 있다 (Lim, 2011a).

2.2.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발효과성이란 용어 역시 부산총회 이전에도 사용되었으나, 뚜렷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2008년 아크라 고위급회담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현황 평가보고서에서 ‘더 나은 원조 및 개발효과성의 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나, 개발효과성에 대한 정의는 제공되지 않았다 (예 : OECD, 2008a: 100). 부산총회 준비기간에도 개발효과성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나, 역시 개발효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정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총회를 계기로 개발효과성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부산총회에 참여한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해하는 개발효과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원국은 개발효과성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효과성이란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 컨센서스(consensus)⁴⁾에서는 개발효과성을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조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를 벗어나, ‘원조를 넘어선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수원국 국민이 국제경제에서 경쟁하여 세익(revenue)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AfDB, 2010).

공여국의 경우,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및 덴마크 등의 공여국은 개발효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사용에 있어서는 파리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원조효과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CIDA, 2006; AusAID, 2010; Danida, 2010).

다자공여기관의 경우 UN 중심의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중심의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에 따라 개발효과성 정의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제기구는 양자공여국과 마찬가지로 개발효과성을 원조효과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UNDP, 2003; UNICEF, 2008). 반면, 국제금융기구는 개발효과

4) 2010년 11월,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이후 NEPAD)의 주최로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튀니지에서 부산총회와 관련하여 개발효과성을 위한 아프리카 아젠다(agenda)에 대한 논의를 거쳐 ‘튀니지 컨센서스’를 도출,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개발효과성을 위한 아프리카 아젠다의 주요 이슈를 제시하였다 (AfDB, 2010).

성을 ‘조직효과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가 이해하고 있는 개발효과성이란 ‘개발기관(development institutions) 활동의 책무(accountability) 달성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IDB, 2008; IBRD, 2009; ADB, 2010; IDB 2010; AfDB, 2011).

위의 세 주체들과 비교했을 때 시민사회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특히, 2010년 이스탄불 원칙(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관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Open Forum, 2010). 시민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개발효과성이란 ‘인권 등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틀 안에서의 지속가능한 긍정적 변화의 촉진’이라 할 수 있다 (Tomlinson and Wanjiru, 2010: 5).

민간분야에서는 개발효과성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산총회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개발협력 네트워크(Trade Union Development Cooperation Network, TUDCN)’⁵⁾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들은 원조와 같은 국가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고 원조효과성 원칙을 심화하는 의미로 개발효과성을 해석하고 있다 (TUDCN, 2011a & 2011b). 또한 노동조합은 개발효과성을 시민사회의 이스탄불 원칙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TUDCN, 2011a & 2011b).

부산총회에서 새롭게 개발협력의 주체로 논의된 의회 역시 개발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각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부산총회를 위해 논의된 ‘개발효과성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국회의원 실천서(Practical Guidance for Parliamentarians on the Role of Parliaments in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통해서 의회가 바라보는 개발효과성이란 ‘개발을 위한 가능한 모든 재원의 효과적 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Cox and Motter, 2010: 3).

마지막으로,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도 개발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부산총회를 계기로 북-남연구소(North-South Institute)가 유일하게 개발효과성의 개념을 ‘조직효과성, 일관성, 원조의 개발성과(development outcomes), 전반적 개발성과’의 4개로 분류하였다 (Kindornay, 2011). 북-남연구소의 4가지 분류 중 ‘조직효과성’은 국제금융기구에서 보고 있는 조직효과성과 유사하며, ‘일관성’이란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또한 ‘원조의 개발성과’는 수원국, 공여국 그리고 의회가 이해하는 개발효과성과 유사하며, ‘전반적 개발성과’란 앞의 3가지 분류를 모두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발과정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indornay, 2011). 이 중 마지막 분류인 ‘전반적 개발성과’가 개발의 성과(outcome)는 어느 한 주체만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아닌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가 행하는 원조

5) TUDCN은 ‘무역연합 개발협력 네트워크’라고 오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trade union’은 노동조합을 뜻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TUDCN을 ‘노동조합 개발협력 네트워크’로 명시하는 바이다.

활동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부산총회에서 사용된 개발효과성과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효과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부산총회에서 수원국 중심의 개발을 강조한 점과 원조를 넘어선 개발협력을 강조한 점, 그리고 원조전달 과정이 아닌 개발협력을 통한 ‘원조 수혜자’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이란 **‘수원국 국민을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개발활동 성과의 최대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개발효과성의 정의에서 ‘개발활동의 성과’를 말할 때 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계를 두어 정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그 범위가 자칫 너무 광범위해져서 오히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3. 효과적 개발협력(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은 각각 원조전달 과정에 초점을 두느냐와 개발협력활동의 수혜자에게 초점을 두느냐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발효과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발견되었던 ‘개발’이 뜻하는 범위 정의에 대한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부산총회 결과문서에서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결과문서 역시 과연 효과적 개발협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다른 문헌에서도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KOICA와 UN 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의 공동연구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을 ‘수원국의 자주권(sovereignty)을 기반으로 한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인간과 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원조 및 원조 외 정책의 일관성(coherence and consistency) 정도(extent)’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Yi et al., 2011: 120). 다시 말해서, 효과적 개발협력은 공여국들이 강요하는 정책을 수원국들이 이행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과 성과에 대한 통제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Yi et al., 2011: 121).

그러나 ‘정책일관성’만이 효과적 개발협력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의문과 함께, ‘인간과 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원조 및 원조 외 정책’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범위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여 자칫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평가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원조 외 정책’의 범위도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산총회의 논점을 중심으로 하여 효과적 개발협력이란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가 행하는 수원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관련 개발협력 활동성과의 최대화’**라고 정의해 본다.

위와 같은 개념적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 그리고 ‘효과적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란 수원국 및 개발협력 활동의 수혜자에 대한 강조, 원조만이 아닌 원조관련 개발협력 활동의 포함, 그리고 원조를 넘어서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양상(landscape)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표 1] 참고), 위의 세 개념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효과적 개발협력의 정의 비교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효과적 개발협력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원조성과의 최대화	수원국 국민을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개발활동 성과의 최대화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가 행하는 수원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관련 개발협력 활동 성과의 최대화

출처 : 저자 작성

3. 파리선언의 이행결과와 한계

파리선언은 지표는 [표 2]와 같이 5대원칙별 총 13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파리선언은 2005년 당시 12개 이행지표를 제시하였으나, 2011년 파리선언 이행 최종 평가에서 목표설정이 되어있지 않던 지표 2b(신뢰할만한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와 지표 5b(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를 제외한 후 지표 10a와 10b를 각각 별개의 지표로 하여 총 13개의 지표로 재정립하였다 (OECD, 2011a).

[표 2] 파리선언 5대원칙 및 13개 세부지표

5대 원칙	13개 지표
주인의식 (Ownership)	1. 수원국의 실질적 개발전략 소유 ▶ 중기 재정지출 프레임워크 및 연간예산이 반영된 국가개발전략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이후 NDS - PRS 포함)을 갖고 있는 수원국 수
원조일치 (Alignment)	2a.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이후 PFM)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PFM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수원국의 수
	2b.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수원국의 수
	3. (수원국) 국가우위와 일치된 원조의 흐름 ▶ 수원국 국가예산에 보고된 정부분야로의 원조자금 비율
	4. 조율된(coordinated) 지원을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 ▶ 수원국 NDS에 부합하는 조율된 프로그램을 통한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비율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활용 ▶ 모범사례가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변화가 있는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 활용 공여국 수와 원조자금 비율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 모범사례가 반영되었거나,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 변화가 있는 수원국의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 공여국 수와 원조자금 비율
	6. 평행적수행조직(parallel implementation structure) 중복회피를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 ▶ 수원국별 공여국의 평행적 프로젝트수행조직(PIUs) 수
	7. 원조예측성 제고 ▶ 연간 또는 다년간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는 원조자금의 비율
	8. 원조의 비구속화 ▶ 양자원조의 비구속화 비율
원조조화 (Harmonization)	9. (원조사업의) 공동 업무처리(arrangements) 또는 절차(procedures) 사용 ▶ 프로그램형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 이후 PBA)에 의해 제공된 원조의 비율

원조조화 (Harmonization)	10a. 공동 현지사무소 ▶ 공여국간 공동 현지사무소 운영
	10b. 공동 국가 분석 활동 ▶ 공여국간 공동 국가 분석 활동 진행
결과중심원조 (Managing for Results)	11. 결과중심의 프레임워크 ▶ NDS와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를 위한 투명하고 모니터링 가능한 평가프레임워크를 소유한 국가 수
상호책임성 ⁶⁾ (Mutual Accountability)	12. 상호책임성 ▶ 파리선언을 포함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합의된 공약의 이행상황의 상호(mutual)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국의 수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한국국제협력단, 2008; 박수영 외, 2009; 이현주, 2011

공여국 및 수원국들은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5대원칙 중 주인의식을 가장 많이 향상시켰고, 원조일치와 원조조화에 대해서는 불균형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결과중심의 원조와 상호책임성에 관한 두 개의 원칙에 있어서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Wood et al., 2011). 수원국별 발전 정도는 분쟁 및 취약국에서 가장 낮았고, 공여국의 이 국가들에 대한 시스템 활용 및 PBA 활용 정도도 낮았다 (임소진, 2011a). 또한, 취약국과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ies, 이후 MICs)간 공여국의 원조비구속성 증가와 국가 시스템 활용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OECD, 2011a).

지표별로 보았을 때 2011년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최종결과에 따르면, 총 13개의 지표 중 지표 4(조율된 기술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에 대한 목표만이 달성되었고, 나머지 12개의 지표는 달성되지 못한 실패의 결과를 낳았다 (OECD, 2011a). 단, 지표4의 조율된 기술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수원국 현실에 근거한 기술지원이 아닌 공여국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소진, 2011a).

비록 국제사회가 파리선언 13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파리선언은 공여국의 원조 과정에서의 행동변화 뿐 아니라 수원국의 원조재원 관리 역량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의 시도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리선언 13개 지표의 개발은 MDGs 목표달성을 위한 공여국 및 수원국의 행동변화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원조의 잠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였으며, 파리선언의 이행은 원조 주체간 파트너십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Wood et al., 2001). 또한, 파리선언의 이행과정은

6) 파리선언 뿐 아니라 부산파트너십에서도 'accountability'가 주요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accountability'의 용어정립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accountability'를 '책임성'과 '책임성'의 두 용어로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책임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책임이란 '책임과 의무'라는 책임성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저자의 기존 연구에서도 'accountability'를 '책임성'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책임성'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올바르게 통일된 용어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accountability'는 '책임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향상 정도가 느리고 수원국간 그리고 공여국간 불균형한 발전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국제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De Renzio, 2008).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이러한 시도와 의도한 발전이 일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리선언은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우선, 2005년에 합의된 파리선언의 이행 원칙과 지표들을 2010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하기로 한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Lim, 2011a; Wood et al., 2011). 예를 들어, Non-DAC 공여국⁷⁾이나 신흥공여국이 파리선언이 요구하는 PBA를 통해 원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DAC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원조관리시스템과 비슷한 공여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혁이 5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 : 한국) (박수영 외, 2009, Lim, 2011b). 이는, 파리선언이 특히 유럽중심의 선진공여국에 의해 주도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 (박수영 외, 2009; Lim, 2011b), 파리선언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Non-DAC 공여국 및 신흥공여국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파리선언 지표들은 결국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이행가능한 지표가 되었다. 또한 파리선언 지표 개발과정에서 Non-DAC 회원국과 신흥공여국의 원조시스템 및 원조방법(aid modality)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다 (OECD, 2008c; 박수영 외, 2009). 이와 관련하여, 부산결과문서 합의과정에서는 특히 BRICS 중심의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개발과정에서도 신흥공여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들 국가의 부산파트너십 이행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파리선언은 수원국의 정치적 환경에 개입하는 공여국의 집단적 시도 (collective attempt)라는 비판이 있으며, 일부 공여국 및 수원국은 심지어 파리선언을 하향식 계층적(top-down hierarchical) 성격에 기반한 양자동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Booth, 2008; Lundberg and Palmgren, 2008). 더불어, 파리선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비판이다. 즉, 파리선언 지표는 공여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원조의 정치·경제적 계산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정치적 힘겨루기도 파리선언 목표달성의 실패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Tarp, 2000; OECD, 2008c).

이와 같은 점은 곧 공여국의 정치적 공약과 파리선언 이행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여부에 의한 파리선언 이행의지 부족이 이들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변화의 부재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파리선언 이행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Hyden, 2008; Lim, 2011a).

7) 한국은 파리선언 채택 당시 Non-DAC 공여국이었으며, 2010년 공식적으로 DAC 회원국으로 등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공여국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이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Booth, 2008). 한국의 경우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 DAC 가입 이전까지 정부 및 국회 등의 파리선언 이행 참여 및 행동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지원은 매우 미비하였다 (Lim, 2011b).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있어서 global light, country focused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장에서의 공여국 참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리선언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공여국 및 수원국별로 상이했으며, 이는 지표에 대한 정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Stern, 2008; Wathne and Hedger, 2009; 박수영 외, 2009). 즉, 파리선언 지표설정에 있어서, 지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개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Booth, 2008). 예를 들어, 세 차례에 걸친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서베이에서 각 공여국과 수원국은 평가기준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평가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박수영 외, 2009; 임소진, 2011b). 이를 바탕으로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개발과정에서 각 지표의 배경, 설명, 평가방법에 대한 명료한 지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 공여국과 수원국 현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완벽한’ 지표 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명료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하나 모든 국가의 현실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넷째, 파리선언 이행에서 요구되는 수원국 공공시스템의 수준이 실제 수원국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은 수준이었으며, 수원국 중심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들이 결국은 공여국에 대한 수원국의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비판이다 (박수영 외, 2009; Wathne and Hedger, 2009; Lim, 2011b). 예를 들어, 실제 파리선언이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원국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국은 공여국의 제안사항과 요구를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박수영 외, 2009).

또한, 실제 수원국 고위관료 및 주요 정치인들은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선거의 재당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였다. 이는 곧 파리선언의 이행이 수원국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Booth, 2008).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비록 부산총회에서는 global light, country focused를 강조하고 있으나 수원국 고위관료와 정치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지표들이 실제 수원국 입장에서 얼마나 큰 관심의 대상이 될지가 의문시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있어서 수원국의 적극적 개입과 참여를 유도하고, 수원국의 현실 및 역량개발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country focused를 수원국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의미의 수원국 중심이 아니라, 수원국 공공시스템과 국가역량 수준평가에 따른 수원국별 차등있는 이행 목표설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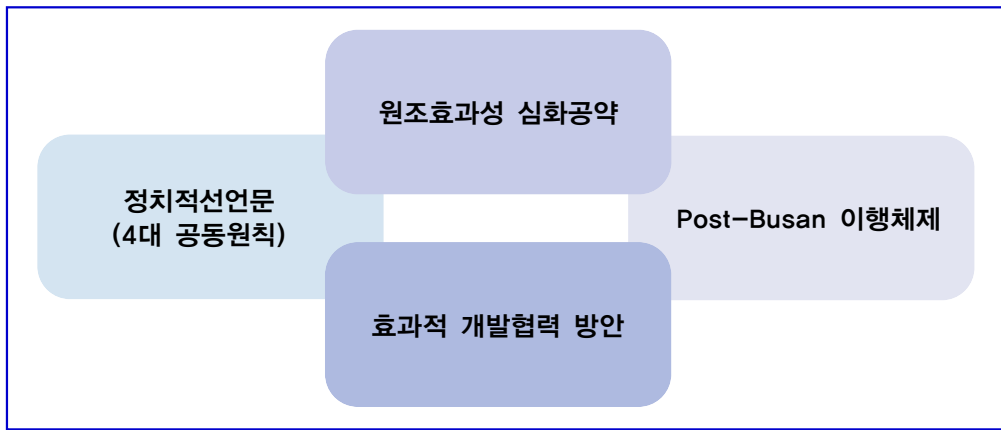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파리선언 이행지표는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원조 성과의 최대화’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행과정에서 원조전달의 절차와 과정을 강조하면서 원조수혜자인 수원국과 수원국 국민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간과하였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Lim, 2011b). 즉, 실제 이행과정에서 원조전달과정(aid delivery) 중심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파리선언 개발과정에서 고려하였던 파리선언 이행 각 단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래 의도한 효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Foresti et al., 2006).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정치적 지원과 조율된(coordinated) 행동을 투입(input)으로 보았을 때, 파리선언 이행결과는 산출물(output)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outcome)는 수원국의 역량강화 및 결과중심의 정책이행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성장 및 경제구조 전환, 그리고 MDGs 및 수원국 국가발전목표 달성이 최종효과(impact)가 되는 것이다 (Foresti et al., 2006). 그러므로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개발 및 이후 이행과정에서 목표달성(outcome) 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효과(impact)에 대한 방향설정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리선언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 및 MDGs 달성을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행동변화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지표의 이행에 있어서는 실패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파리선언 실패의 이유 및 한계점 분석을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대한 시사점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4.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과 세부공약

단일화 된 문서인 부산결과문은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첫 부분에서는 부산총회의 정치적인선언문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결과문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산결과문서의 구성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1d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다자기관은 정치적인선언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⁸⁾의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inclusive)⁹⁾ 개발 파트너십, 그리고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의 4대 공동원칙 및 4개의 행동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3] 및 [표 4] 참고). 그러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함축적이어서 내용의 명확한 이해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산결과문서의 정치적인선언문 이후에 제시된 ‘원조효과성 심화공약’과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도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산파트너십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 등장한 민간부문과 의회 등의 개발협력 주체들과 관련된 부산파트너십 공약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결과문서의 주요 내용의 해석과 번역 과정에 있어서 KOICA 카메룬사무소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2012b) 위의 항목들을 ‘개발성과를 위한 방안’과 ‘원조효과성 심화’라고 명시하면서, 그 하위항목을 부산결과문서에서 정리한 내용과는 다르게 재배열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8)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강령에서는 수원국을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부산파트너십에서는 수원국을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9) ‘포괄적’을 ‘포용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교부 내부문서 중 부산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포괄적’과 ‘포용적’을 혼재하여 사용하나, 영문표기는 모두 ‘inclusive’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저자의 부산파트너십 관련 기 연구들에서도 ‘inclusive’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용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독자들의 ‘포용적’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embrace’와의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inclusive’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포괄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3] 파리선언 5대원칙과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 비교

파리선언 5대원칙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
주인의식 (Ownership)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원조일치 (Alignment)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원조조화 (Harmonization)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결과중심의 원조 (Managing for Results)	투명성 및 상호책임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상호책임 (Mutual Accountability)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OECD, 2005 & 2011b

[표 4]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과 그에 따른 행동방안

4대 공동원칙	공동원칙에 따른 행동방안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개발정책 및 절차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확대, 운용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중심의 관리,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개선과 지원 규모 확대, 국가 역량 강화 및 다양한 개발 성과 관련 재원과 이니셔티브의 활용과 같은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한 노력 강화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위한 노력 확대
투명성 및 상호책임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자원 활용 및 개발협력 활동의 촉매적 역할 확보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1d

부산결과문서의 정치적선언문 이후에 제시된 후속부분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적 행동방안(Realizing change: Complementary actions to reach common goals)’, ‘효과적 원조에서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으로(From effective aid to coopera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그리고 ‘진보와 MDGs¹⁰⁾ 이후를 위한 파트너십(The road ahead: Partnering for progress towards and beyond the MDGs)’의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1] 참고).

10)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 2001년에 수립된 MDGs는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8개 분야를 달성하여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치선언문 후속부분의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제일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한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인 ‘진보와 MDGs 이후를 위한 파트너십’은 ‘Post-Busan 이행체제’로 간단히 재정의 할 수 있다. ‘Post-Busan 이행체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2012년 6월까지 Post-MDGs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부산공약 이행을 위한 선택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역량강화 및 개발효과성 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개도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OECD 주도로 이루어졌던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을 부산총회 이후에는 UN 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이후 UNDCF)이 자문 역할을 하고 UN 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협력하는 형태, 즉 OECD와 UN의 협력체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둘째, 부산파트너십 정치선언문 후속부분의 첫 부분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적 행동방안’은 ‘원조효과성 심화공약’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 원조효과성 심화를 위해 부산결과문서는 ‘공동원칙 및 차별화 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제원조체계의 새로운 개발주체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신흥공여국 및 시민사회와 같은 개발협력 주체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제원조체계에 민간부문 및 의회의 새로운 참여자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북남(North-South)협력과 남남(South-South)협력의 차별성과 보완성을 인정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심화공약’은 ‘개발협력의 질과 효과성 향상’을 강조하면서 1)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2)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3) 분쟁 및 취약한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그리고 4) 재난 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한 공조의 주요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지침은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강령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목표 및 기한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있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각 주요공약에 해당하는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을 함께 정리하였다.

●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 수원국 주요 제도 및 정책강화
- 투명하고 수원국에 의해 주도된 수원국 현장중심의 공동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및 성과플랫폼 추구
-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평가를 위한 통계역량강화 글로벌 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 이행
- 상호평가검토 심화
- 원조비구속성 강화, 아크라행동강령에 이어, 2012년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검토예정

- ▶ 효과적 제도 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강화 및 이용확대
 -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전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 및 지원
- ▶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국가재정이 남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위한 성별 구분된 데이터의 수집 및 배포, 조화, 그리고 데이터의 충분한 활용을 위한 노력 강화
 - 국제 및 지역 공약을 바탕으로 한 책무성 메커니즘의 양성평등과 여성지위 향상 목표(target) 통합
 -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을 포함한 개발노력의 모든 측면에서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향상 고려(address)
- ▶ 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 민주적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공약 이행 심화
 - 하위 국가차원에서의 참여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
- ▶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 시민사회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들의 독립적 개발주체로서의 역할 행사가 가능한 환경조성과 공약 이행
 - 시민사회의 책무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여 강화를 위한 이행 장려

●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 ▶ 정보공개 및 전자공개 방식 활용
 - 개발활동의 모든 정보의 공개
 - 수원국의 투명한 공공재정관리와 원조정보관리시스템 설립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 표준화된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활용, 2012년 12월까지 OECD DAC 및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후 IATI)의 정보공개 기준을 고려한 국제 정보공개 기준 및 이행시간표 확정, 2015년 12월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설정
- ▶ 원조 중기예측성 강화
 - 아크라행동강령 합의사항인 3~5년 기간의 원조 중기예측성에 대한 이행계획을 2013년까지 제시

▶ 원조채널 분절화 감소 및 확산억제

- 2013년까지 PBA, 공여국 원조활동의 분업(division of labor), 공동 프로그램 및 협력을 포함한 수원국 주도의 조율된 업무처리 활용 확대
- 2012년 말까지 원조분절화 감소 원칙 및 가이드라인 합의
- 현지사무소 권한강화를 위한 노력 제고

● 분쟁 및 취약한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분쟁 및 취약국(g7+ 중심)¹¹⁾의 MDGs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New Deal¹²⁾을 이용한 지원

- 합법적 정치(legitimate politics), 보안(security), 정의(justice), 경제기반(economic foundations), 세입과 서비스(revenues and services)를 중심으로 한 평화구축과 국가재건 목표(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이후 PSGs) 추구
- 취약국을 참여시킬 수 있는 수원국 주도 및 수원국 소유의 새로운 방법론의 ‘집중(FOCUS)’
- 투명성 강화, 수원국 시스템 사용을 위한 위험관리, 국가역량 강화, 원조 예측성 향상을 위한 공약인 ‘신뢰(TRUST)’를 통한 더 나은 결과 성취

●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한 공조

▶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의 재난복구 노력 포함

- 수원국 정책 및 전략에 기초한 재난관리 조치(measures)와 충격복원을 위한 충격에 강한 인프라 및 사회보호시스템에 대한 투자

마지막으로, 정치선언문 후속부분의 두 번째 부분은 ‘효과적 원조에서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으로’, 이는 역시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 부산 결과문서의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 부분에서는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란 ‘개발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정부의 재원은 개발을 위한 재정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달성한 개발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산파트너십은 원조가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이란

11) g7+ 그룹은 분쟁을 겪은 국가 및 취약국이 모여서 MDGs 달성을 위한 이 국가들의 현실적 방안을 촉구하는 New Deal을 지지하기 위해 2008년에 결성되었다 (IDPS, 2010). g7+ 그룹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 선진국을 일컫는 G7과 비교하여 소문자 ‘g’를 사용하고 있다.

12) 국제사회는 ‘취약국에서의 참여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을 줄여서 New Deal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OECD, 2011d).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원국 주도의 효과적 제도 및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결과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원국의 효과적 제도 구축은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부산결과문서는 수원국의 효과적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하여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의 4개 주요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 개발협력에서의 삼각협력 방법 이용확대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성공사례 및 시너지효과를 기반으로 두 방법의 활발한 이용
- 개도국의 지식포용 이용강화 수단으로써, 남남협력 주체간 지식교류와 상호학습(peer learning)이 가능한 네트워크 개발 장려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있는 국가역량강화 노력 지원

● 민간부문과 개발

▶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 민간투자의 개발과 관련된 법적, 규제적, 행정적 환경향상을 위한 기업협회 및 노동조합 등의 관련자들(representatives)과의 연계, 그리고 민간부문개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후 PPP)¹³⁾,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강화 등을 위한 건전한 정책과 규제적 환경보장
-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정책 및 전략의 기획과 이행단계의 민간분야 참여확대
- 공동의 개발목표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에 필요한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 개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장려
- 개발과 사업성과의 상호보강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모색 과정에서의 공공분야 및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기관 관련자들(representatives)의적극적 역할 제고를 위한 참여 장려

13) 부산파트너십에서 말하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후 PPP)'을 뜻하며, 이는 한국 ODA에서 말하는 '민관협력'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ODA의 민관협력은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후 CSR)을 바탕으로 한 PPP와 ②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와의 협력을 모두 포함한다. 외교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민관협력' 등을 명시할 때 역시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를 모두 포함한다.

● 부패 및 불법적 흐름(illicit flows)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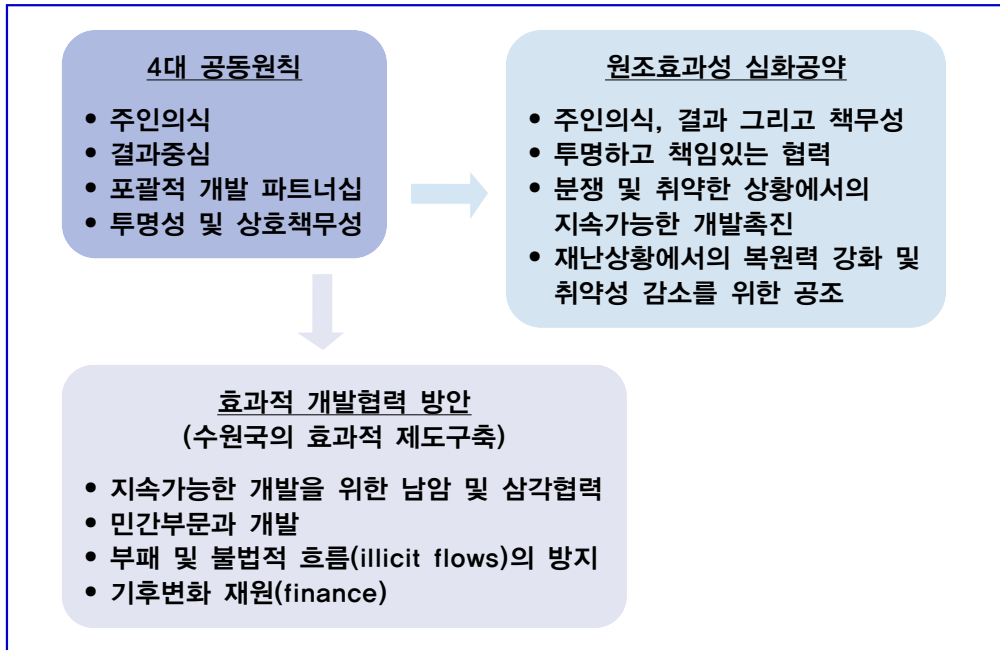
- ▶ 부패근절과 불법적 흐름방지를 위한 UN 반부패협약(UN COntention Against Corruption)과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국제공약 이행
 - 반부패법 강화 및 부패한 행동에 대한 무관용문화의 축진을 통한 부패근절 공약의 충실한 이행
 - 자금세탁방지 조치(measures) 강화, 조세회피 자제촉구, 불법자산 추적, 불법자금 동결과 회수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정책, 법적 프레임워크와 제도적 장치강화 등의 불법자금 방지를 위한 노력 가속화

● 기후변화재원(finance)

- ▶ 효과적 기후재원과 넓은 의미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관성, 투명성, 예측성 강화 노력
 - 개도국의 국가개발계획의 필수부분으로의 국가 기후변화 정책과 기획에 대한 지원 지속, 그리고 기후재원의 투명한 지원과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지원 및 모니터링 보장
 - 개발효과성에 대한 교훈(lessons learned) 공유 지속, 그리고 넓은 의미의 개발협력이 기후재원 혁신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

본 연구는 위의 내용을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4대 공동원칙과 원조효과성 심화공약 그리고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결과문서의 각 세부공약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주요공약이 지표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의 8대 BB를 통해 관련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이후 부산파트너십 세부공약들의 지표화 과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2] 부산파트너십 주요공약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1d

5.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8대 Building Block 이니셔티브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개발에 앞서, 부산총회 결과문서 이행을 위한 자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가능한 8개의 BB가 조직되었다(분쟁 및 취약국가, 남남 및 삼각협력, 민간부문, 기후재원, 투명성, 효과적 제도와 정책, 결과와 상호책임, 다양한 원조채널 관리 및 분절화 감소). BB는 하나의 기준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모델(one size fits all)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BB는 부산총회 준비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시험적 개념(pilot concept)으로써, 부산총회는 BB를 통하여 수원국, 공여국, 다자공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각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부문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각 BB는 부산총회 결과문서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부산총회 이후 지표개발 과정에서도 기존 BB를 중심으로 또는 새로운 BB를 구성하여 지표개발 과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1차 Post-Busan 임시그룹(Post-Busan Interim Group, 이후 PBIG)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¹⁴⁾ 1) 각 BB에 대한 공여국 및 수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구속성의 결여, 2) 해당 BB에 속한 국가들 중 활동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 그리고 3) BB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BB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OECD, 2012a). 사실상 PBIG 회의 이후 각 BB들은 자립적 형태(self-standing alliances)로 남아있기로 동의한 바 있다(OECD, 2012d).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8개의 BB를 분석하면서 부산결과문서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로 활용하고자 한다.

5.1. 분쟁 및 취약국가

현재 분쟁 및 취약국의 인구는 약 15억명으로 추정되며, 1989년 이후 취약국의 약 70%가 분쟁을 겪고 있다(IDPS, 2011a). 또한, 이들 국가에서의 기본 거버넌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40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분쟁과 취약성이 MDGs 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평가되고 있다(IDPS, 2010 & 2011a). 물론,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이행을 통해 분쟁 및 취약국을 위한 원조가 전 세계 ODA 규모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으나, 분쟁 및 취약국 발전을 위해 현

14) PBIG 회의는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및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설립을 위한 Sherpa 회원국 및 다자기관의 회의이다.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은 3차에 걸쳐 열리는 PBIG 회의를 통해 논의된 후, 2012년 6월 원조 효과성 작업반 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또한, PBIG의 논의내용은 PBIG 회의 뿐 아니라 UNDCF, OECD 장관급 회의 및 DAC 고위급 회의, 세계은행 춘계 정기회의(Spring Meetings), 그리고 G20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back-to-back 논의형태), 2012년 6월 최종합의 전까지 각 국가 및 기관의 사결정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OECD, 2012d).

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은 비효과적이며, 원조의 결과와 원조의 가치(value for money) 평가에 있어서는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IDPS, 2011a; OECD, 2011f).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국 BB는 1)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의 PSGs를 중심으로, 2) 국가 주체들이 취약국을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주도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3) 국내 및 해외자원이 평화로운 국가와 사회구축을 위한 역량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빠르고 변화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취약국 BB는 g7+ 그룹과 OECD DAC의 분쟁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이후 INCAF)를 중심으로 국가와 국제 주체들이 분쟁 및 취약국에서 행하는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려 하였다 (OECD, 2011f).

이를 위해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에 대한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이후 IDPS)¹⁵⁾’ 회원국과 취약국 BB 참여국들은 New Deal을 중심으로 한 취약국에서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OECD, 2011f). New Deal은 MDGs에서 몬로비아 로드맵(Monrovia Roadmap)¹⁶⁾에 이르는 비전과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PSGs를 제시하고,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조하며, 상호 신뢰의 구축과 취약국에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IDPS, 2011a). 또한, 취약국 BB 참여국들은 몬로비아 로드맵에서 합의된 1) 합법적 정치(legitimate politics), 2) 보안(security), 3) 정의(justice), 4) 경제기반(economic foundations), 5) 세입과 서비스(revenues and services)의 PSGs를 취약국에서의 활동지침으로 이용하고,¹⁷⁾ 나아가 새로운 Post-MDGs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IDPS, 2011b; OECD, 2011f).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부산총회 지표개발 및 이행평가에 있어서 수원국 중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분쟁 및 취약국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이를 지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적용하고자 한다 (제7장 [그림 3] 참고).

15) 국제사회는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을 간단히 ‘International Dialogue’라고 명시하기도 한다.

16) 몬로비아 로드맵은 2011년에 열린 제2차 IDPS의 결과문서이며, g7+ 그룹 국가들은 몬로비아 로드맵을 통해 부산총회를 위한 준비와, Post-Busan 및 MDGs 달성과 관련된 평화구축과 국가재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DPS, 2011b).

17) 이 중 합법적 정치는 ‘모두를 위한 국가’를, 경제기반은 ‘모두를 위한 일자리’, 세입과 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뜻한다 (OECD, 2011f).

5.2. 남남 및 삼각협력

아크라행동방안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남남 및 삼각협력은 부산총회에서 주요이슈로 부각되었다. 부산총회 참여주체들은 개발과제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으로 대두된 ‘수평적 파트너십(horizontal partnerships)’의 방법으로 남남 및 삼각협력을 논의하였다. 남남 및 삼각협력에 대해 국제 개발협력의 주체들은 지식공유의 힘에 대한 발견, 새로운 플랫폼과 신기술의 활용, 개도국의 현실을 반영한 방안으로의 적응, 상호학습, 주인의식 그리고 개발실체의 다양성 등을 중요시하였다 (OECD, 2011i). 특히 남남협력에 관해서 주요 주체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 양상(landscape)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비롯한 MICs의 개발경험의 전수(transfer)와 반영(adapt)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및 이용을 강조하였다 (OECD, 2011i).

개도국들은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 이후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고, 2009년 후반 개도국의 남남 및 삼각협력을 통한 MDGs 달성을 목표로 한 ‘남남협력을 위한 특별팀(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TT-SSC)’이 형성되어 지식공유를 위한 31개 심층사례연구를 포함한 160개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모범사례보고서(Good Practice Paper, 이후 GPP)’를 발표하였다 (TT-SSC, 2011). 또한, 2010년에 열린 ‘남남협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Event on South-South-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에서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보고타 성명서(Bogota Statement)’를 통해 남남협력 활동의 강화와 한계 및 문제점 도출, 그리고 부산총회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Bogota Statement, 2010). 관련 주체들은 2011년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보고타 워크숍’에서 이러한 2년간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는 부산총회와 남남 및 삼각협력 BB 논의에 반영되었다 (TT-SSC, 2011).

GPP를 통해 발표된 남남 및 삼각협력 사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산파트너십 지표설정 과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남남 및 삼각협력이 개발성과 및 개발협력 효과성 고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지표개발에 있어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을 DAC 회원국과 다자공여기관, 그리고 남남 및 삼각협력의 중심축(pivotal)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Non-DAC 및 BRICS과 같은 신흥공여국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된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7장 [그림 3] 참고).

[표 5] 남남 및 삼각협력 사례분석의 함의

남남 및 삼각협력 사례를 통한 교훈 (lessons learned)	
현장실무자의 효과적 역할 보장과 실제-정책 연합(alliances) 촉진	현장실무자간의 연결
	현장실무자와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학계의 연결
	현장실무자의 역할에 대한 제도화
남측 파트너들의 역량강화	남남협력의 병목현상 파악
	지식교환 파트너들간의 역량개발 촉진
	개선과정의 측정
	지역 플랫폼과 동료검토(peer review) 등의 실행을 통한 역량개발의 조율
삼각협력을 통한 강점보완 및 원-원-원 모델 형성	필요에 의한 삼각협력 촉진
	상호 책임을 중심으로 한 삼각협력 형성
	행정비용(transaction costs)과 강점보완을 위한 분석 심화
지식공유 확대	지식교환 메커니즘 관리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과 기술적 리더십의 균형
	수원국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중개(broker)
	결과중심의 이행과 수원국 주도의 이행 지원
	지식교환 파트너간의 제도적 역량 지원
	목표를 중심으로 한 융통성 있는 자금지원
	지식교환의 질적 보장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TT-SSC, 2011

5.3. 민간부문

원조만으로는 빈곤퇴치와 개발, 그리고 2015년 MDGs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특히 민간부문과 같이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직접재원을 투자하여 잠재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개발주체의 참여가 개발활동에 있어서 필수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부산총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을 주요 개발협력의 주체로 인식하고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필수적 파트너로서 포함하였다. 그러나 개발협력에는 다소 생소한 민간부문의 올바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산총회 이외의 자발적인 참여구도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BB가 구성되었다. 민간부문 BB의 주요 논의는 1) 국가차원에서의 상호작용, 2) 촉매제로써의 파트너십, 3) 공동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OECD, 2011g).

우선, 국가수준에서의 효과적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가장 큰 과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민간부문과 개발 이해관계자 간의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투자의 규모를 향상시키면서 민간부문이 개발을 위한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 개발재원으로써의 PPP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공동혁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OECD, 2011g).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사업으로의 자발적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전통적 형태의 개발협력 주체들이 새로운 민간부문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통적 개발협력의 주체들의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부산총회 지표개발 및 평가 프레임워크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4. 기후재원

기후재원 BB는 MDGs와 빈곤감소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개발촉진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 의한 녹색성장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개발과 기후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OECD, 2011e). 다만 기후재원과 개발협력 과정에 대한 논의가 파리선언 제40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행을 위한 지표로는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기후재원과 개발에 대해 지표로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총회 지표개발에 있어서도 기후재원과 개발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후변화 재원은 이후 Post-MDGs 논의에서 Rio+20과 함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산파트너십에서는 주요 지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Post-MDGs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5.5. 투명성

원조투명성은 개발성과의 향상, 원조예측성의 제고, 부패근절과 같은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투명성 BB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원조예측성과 책무성을 위한 원조투명성 및 국가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 제고를 위해 조직되었다. 원조투명성과 국가재정투명성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조투명성이 없는 수원국의 국가예산 투명성은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원조흐름의 투명성과 수원국 자체 재원의 투명성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OECD, 2011j).

투명성 BB는 원조투명성이 개발을 위해 의미가 있어야 하며, 공동의 재정투명성

기준의 설립이 필요하고, 원조투명성과 재정투명성 프레임워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투명성 BB는 2012년 12월까지 투명성 공약의 실행을 위한 일정을 이행하고, 이 일정과 맞추어 2015년 12월까지 IATI 기준과 맞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원조흐름에 대한 포괄적이고(comprehensive) 실질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OECD DAC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원조흐름과 새로운 개발주체들의 원조 및 개발흐름을 위한 IATI 기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원조투명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의 예산문서 등의 원조정보 포함을 위해 IATI ‘국가예산식별자(country budget identifier)’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 외에 투명한 PFM 시스템의 형성과 민간부문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과 책무성 메커니즘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OECD, 2011j).

따라서 투명성 관련 지표는 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IATI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원국의 PFM 시스템 및 조달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과 이를 이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파트너십 지표로써 2015년 이전까지 IATI 기준을 따른 정보공개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에서 예상지표 모니터링 방법을 논의하면서 다루어질 것이다.

5.6. 효과적 제도와 정책

파리선언이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원조전달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부산총회는 개도국의 제도와 역량을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 효과적 제도와 정책 BB는 이러한 변화를 강조하면서, ‘개발을 위한 효과적 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컨센서스(New Consensus on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이후 New Consensus)’를 기본으로 효과적 제도,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B는 ‘효과적 제도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 to Effective Institutions)’의 소개, 이 아젠다를 위한 수원국과 공여기관의 이행사례 공개, 그리고 Post-Busan의 New Consensus 이행을 위한 방법(modalities)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OECD, 2011b).

효과적 제도와 정책 BB는 New Consensus를 위해 1) 정치경제, 국가리더십, 결과 중심, 경영변화, 제도와 정책의 순차적 변화, 하위국가제도, 의회의 역할, 시민사회, 더 나은 국가 내 자원동원을 포함한 역량개발과 개발이 가능한 요소로의 집중, 2) 위

협 인식, 분석, 평가를 위한 공동작업과 수원국 주도의 국가제도, 시스템, 회복력, 역량개발의 필요성의 공동평가, 3) 제도적 수행에 관한 국가중심적 수원국 주도의 실증 사례 수집 및 의사결정, 책무성, 투명성, 접근성에 관한 역량개발, 4) 체계적인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지식공유와 같은 방법에 합의하였다 (OECD, 2011b).

특히, 수원국의 효과적 제도와 정책강화는 수원국 역량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투명한 수원국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그림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수원국 시스템 강화는 원조효과성 심화공약 중 하나이며, 수원국 제도강화와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의 한 공약이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은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5.7. 결과와 상호책무성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좀 더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개발협력 결과와 정보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주체들이 결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도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개발의 성과, 산출물, 결과를 제외한 재원의 흐름과 투입물에 관한 평가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는, 너무 많은 결과지표를 설정하거나, 개도국 중심이 아닌 공여국 중심의 지표들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과정보가 평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거나 전략적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과와 상호책무성 BB는 ‘국가결과 및 책무성 합의문(Country Results and Accountability Agreements)’을 채택하여 더 나은 개발결과 성취를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합의문은 1) 개도국과 개별적 개발협력 주체의 성과(performance) 측정과 2) 모든 가능한 개발 파트너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과 개발협력의 주체들은 1) 개도국 시스템의 강화, 2) 통합적이고 결과중심인 공공부문 관리 강화, 3) 결과중심의 원조, 4) 결과중심의 보고(reporting)를 통해 결과의 책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OECD, 2011h).

파리선언의 마지막 두 원칙(결과중심의 원조, 상호책무성)의 해당 지표를 보았을 때 (제3장 [표 2] 참고), 결과중심의 원조와 상호책무성은 해당 원칙을 이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했다는 것 보다는 관련 프레임워크 및 평가제도가 있는 수원국의 수를 평가하였다. 그로 인해 과연 공여국과 수원국이 이 두 원칙의 중요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행을 위해 어떠한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서 결과와 상호책임성 관련 지표는 결과와 상호책임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5.8. 다양한 원조채널 관리 및 분절화 감소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양자 및 다자기관과 민간기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는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파트너십을 위한 잠재성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수원국들은 개발협력 및 원조의 다양한 채널의 확산과 분절화로 인해 ‘원조 및 개발흐름의 관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조분절화 BB는 부산결과문서에 충실하며 Post-Busan 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수원국과 국제사회의 공약이행을 위해 결성되었다 (OECD, 2011c).

우선, 수원국차원의 개발협력 주체들은 1) 분절화 감소와 다양화 관리를 위한 수원국 주도의 이니셔티브 강화와 2) 남남협력 주체 및 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공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개발협력 주체들은 1) 아크라행동강령 제19c항에 의거한 새로운 원조전달채널을 형성하기 이전에 ‘두 번 생각하기’와 2) 다자기관 성과평가 네트워크(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MOPAN)의 평가 및 OECD DAC의 분석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의 다자 및 양자시스템 분절화 감소를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실증중심의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였다. 다양한 원조채널 관리와 분절화 감소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과와 상호책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OECD, 2011c).

원조분절화 BB는 국가차원의 공약에서 분절화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국가별 맥락에 따라 공여국 원조활동의 분업, 분야별접근법(Sector-Wide Approach, 이후 SWAp) 또는 PBA, 공동지원전략(Joint Assistance Strategies, 이후 JAS) 또는 공동프로그램을 예로써 제시하고 있다 (OECD, 2011c). 그러므로 원조의 분절화 감소를 위한 지표들은 파리선언의 공여국 원조활동의 분업, PBA 사용, JAS의 개발과 참여 등을 중심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파리선언 지표의 한계점, 부산파트너십 및 BB, 그리고 부산파트너십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하여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예상지표의 모니터링 방법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 개발협력 Think Tank로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독립적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소의 지표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다.

국제개발협력 Think Tank의 선별은 해마다 전 세계 Think Tank들의 성과와 공공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를 통해 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Think Tank 보고서(The Global Go To Think Tanks Report)’의 2011년 ‘국제개발 Think Tank’ 순위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McGann, 2012). 예를 들어, 전 세계 상위 30위의 국제개발 Think Tank 중 각각 1, 2위를 한 브루킹스연구소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는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31개의 지표를 개발하여 원조기관에 대한 ODA 질적평가(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후 QuODA)¹⁸⁾를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표 6] 참고). 표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QuODA의 31개의 지표 중 일부는 파리선언 지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방법 논의에 있어서, 예상지표 중 파리선언과 중복되는 지표의 경우 QuODA의 모니터링 방법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4대 공동원칙의 마지막 원칙인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과 같은 경우 QuODA를 포함한 Think Tank의 평가지표 및 연구자료 이외에도 부산파트너십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있는 IATI의 원조투명성 평가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지표개발에 활용하였다 (제9장).

그 외에 지표 개발 단계에서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및 KOICA 정책총괄팀, 기획예산실, 민관협력실, 평가실, 조달계약팀 등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의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중인 지표개발의 방향 및 예상지표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OECD PBIG 제1차 회의결과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반대로 본 연구의 내용이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 PBIG 회의에 반영되기도 하였다.¹⁹⁾ 그 외 국내 민관협의회 및 시민

18) QuODA 제1차 보고서인 2010년 보고서의 분석은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6호’를 통해 출판되었으며, QuODA 제2차 보고서인 2011년 보고서의 분석연구는 2012년 상반기 KOICA 개발정책 포커스를 통해서 출판될 예정이다.

19) 예를 들어 제1차 PBIG 회의 이후 이루어진 설문조사 과정에서 KOICA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설문에 대한 KOICA의 답변을 외교부로 송부, 외교부에서는 KOICA 관련부서의 조율된 의견을 다른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취합하여 PBIG에 제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제2차 PBIG 회의 이전에 외교부와 KOICA 관련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목표한 바대로 OECD 지표개발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사반영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 과정에 대한 KOICA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회 회의 자료 분석과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지표개발과 관련된 동향 파악을 통해 지표개발 과정에 활용하였다.

[표 6] QuODA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1. 효율성 극대화	2.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 배양
1) 빈곤국 지원 비중	9) 수원국의 최우선 개발과제에의 지원 비중
2) 거버넌스가 안정된 국가 지원 비중	10) 프로젝트 이행 별도조직 신설 최소화
3) 공여국의 낮은 행정비용	11) 수원국 예산시스템 반영 원조 비중
4) 국가프로그램원조 비중	12) 효과적인 수행전략을 가진 수원국에 지원된 원조
5) 수원국 선택/집중	13) 수원국 시스템 활용
6) 분야별 선택/집중	14)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전략에 일치하는 기술협력
7) 글로벌 공공재 제공 다자기구 기여도	15) 수원국이 예측가능한 원조 비율
8) 비구속성 원조 비중	16) 향후 원조계획 공지/원조예측성
3. 수원국의 행정부담 경감	4. 원조의 투명성과 학습
17) 공여국이 가하는 수원국의 행정부담 감소	24) <i>IATI 가입 여부</i>
18) 공여국 내 원조기관 분절화	25) <i>IATI 데이터 보고기준의 이행</i>
19) 프로젝트 규모의 중간값	26) <i>프로젝트명과 내용에 대한 보고</i>
20) 다자기관내의 지원율	27) <i>프로젝트 상세내용</i>
21) 한 수원국 내 공여국들의 사무소 및 행정 공유도	28) 원조전달채널에 대한 보고
22) 한 수원국 내 공여국 공동연구 및 통합 보고서 제작을 통한 수원국의 부담 경감	29) 국별 원조 공약액과 프로젝트 단위 공약액 합계 일치도
23) 프로그램형 원조지원	30) <i>공여국 주요 원조기관 평가정책의 질</i>
	31) <i>양질의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소유한 수원국으로의 원조</i>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Birdsall and Kharas, 2010 & 2011

7.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이행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파트너십 이행 달성을 위한 시간적 목표를 MDGs 달성과 맞추어 2015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단, 지표가 2012년 6월에 발표되어 2015년까지 이행기간이 3년 6개월이라 했을 때, 이는 파리선언의 5년 이행목표보다 더 짧은 기간이므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파리선언의 13개 지표보다는 적은 수의 부산파트너십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제사회는 PBIG 회의를 통해 부산 파트너십의 지표는 소수로 제한된 글로벌지표와 국가별로 선택하는 국가지표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하였다 (OECD, 2012e & 2012f). 특히 니즈(needs) 또는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수원국의 경우 ‘지표의 메뉴식 접근법(menu of indicators approach)’²⁰⁾을 이용하여 별도의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OECD, 2012e & 2012f).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8장에서 글로벌차원의 지표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지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을 위해 본 장에서는 부산파트너십 지표설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예상지표를 글로벌지표와 국가지표로 나누어 선정 후, 제9장에서 제8장에서 제안된 지표의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파리선언의 재분석을 통하여 보았을 때, 지표설정 시 선진공여국 중심으로 지표가 개발되어 신흥공여국의 원조시스템 및 현실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이들 국가의 파리선언 이행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파트너십 지표설정에 있어서 일부 지표는 모든 공여국이 함께 이행하고, 일부 지표는 차별화를 두어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DAC 회원국 및 다자기관, 그리고 Non-DAC 회원국 및 BRICS 중심의 신흥공여국을 차별하여 이행목표의 수준을 DAC 회원국보다 Non-DAC 회원국에게 더 낮게 제시하거나 이행해야 할 지표의 수를 더 적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공여국 뿐 아니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Non-DAC 공여국의 참여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²¹⁾ 또한, 부산총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남남 및

20) PBIG이 제시하는 지표의 메뉴식 접근법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수원국이 국가맥락과 상황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지표를 선택하여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1)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원조효과작업반의 2008년 파리선언 이행 공여국 개요서(Compendium of Donor Reports o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Non-DAC 공여국들이다 (OECD, 2008c).

삼각협력에 있어서 남측공여국(Non-DAC 및 신흥공여국)과 북측공여국(DAC 회원국)의 역할과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표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지표개발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지표의 메뉴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파리선언의 참여가 저조하였던 신흥공여국과 수원국들의 자발적 참여와 각 국가별 상황이 반영된 지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global light, country focused를 기본으로 하여 수원국 내에서 더 많은 공여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는 또한 수원국 시스템 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이용은 수원국의 시스템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원국 시스템의 개발 수준과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여국들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과 같은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취약국과 MICs 간 차이가 있었다 (제3장 참고). MICs와 비교하여 취약국을 차별화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크라행동강령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부산파트너십에서 분쟁 및 취약국(g7+그룹)을 별도로 제시하여 타 수원국들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제5장 참고). 따라서 수원국을 위한 지표를 그룹별로 차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요구하는 수원국 공공시스템의 수준 및 수원국의 역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것과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국을 그룹별로 차별화하여 각 그룹별 자발적 이행 모니터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수원국의 그룹별 분류는 공여국의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있어서 수원국 그룹별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다만, 다음의 [표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g7+ 국가들은 대부분 최빈개도국(Least Developing Countries, 이후 LDCs)에 속한 국가들이고, 남수단과 코트디부아르는 각각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이후 LICs)과 낮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이후 LMICs)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RCIS에 속한 브라질, 중국, 남아공을 비롯하여, 파리선언의 공여국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한 터키, 그리고 신흥공여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 등은 높은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이후 UMICs)에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UMICs 국가들 중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의 남미국가들과 알제리,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일부 국제기구에서는 신흥공여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 : UNODC, 2012).²²⁾ 따라서 UMICs 국가들은 Non-DAC 신흥공여국과 수원국 두 그룹으로 재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BRICS 국가를 제외한 UMICs 국가들 중 신흥공여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들은 각 국가의 자발적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신흥공여국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파트너십에서 신흥공여국으로 분류되기를 원하지 않는 수원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원국을 1) 분쟁 및 취약

22) [표 7]에서 *표시된 UMICs는 신흥공여국으로 분류 가능한 국가들이다.

국인 g7+, 2) g7+를 제외한 LMICs, LICs, LDCs, 그리고 3) 수원국들 중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UMICs의 총 3개 그룹으로 나누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표 7]의 UMICs 리스트에서 브라질과 중국 그리고 남아공은 BRICS의 국가들로서 수원국이 아닌 신흥공여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7] 수원국 비교표 (2010~2013년)²³⁾

LDCs	LICs (per capita GNI USD 1,005 이하)	LMICs (per capita GNI USD 1,006~ USD 3,975)	UMICs (per capita GNI USD 3,976~ USD 12,257)
Afghanistan (g7+)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g7+) Cambodia Central African Rep. (g7+) Chad (g7+) Comoros Congo, Dem. Rep. (g7+)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g7+)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g7+)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g7+) Niger Rwanda	Kenya Korea, Dem. Rep. South Sudan (g7+) Kyrgyz Rep. Tajikistan Zimbabwe	Armenia Belize Bolivia Cameroon Cape Verde Congo, Rep. Côte d'Ivoire (g7+) Egypt El Salvador Fiji Georgia Ghan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Iran Kosovo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erated States Moldova Mongolia Morocco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Sri Lanka Swaziland Syria Tokelau	Albania <i>Algeria*</i>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zerbaijan Belarus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i>Brazil (BRICS)</i> <i>Chile*</i> <i>China (BRICS)</i> <i>Colombia*</i> Cook Islands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i>Ecuador*</i>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abon Grenada Iran Jamaica Jordan <i>Kazakhstan*</i> Lebanon <i>Libya*</i> Malaysia <i>Maldives*</i> Mauritius

23) 본 리스트는 2014년까지 유효한 분류체계이다 (OECD, 20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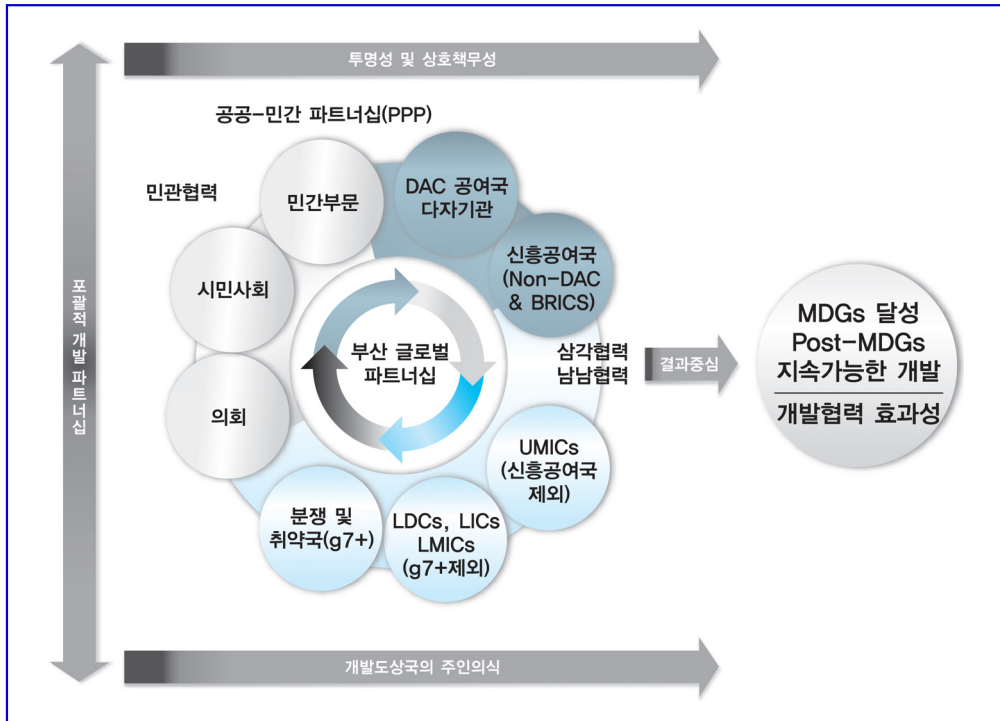
Samoa São Tomé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g7+) Solomon Islands (g7+) Somalia Sudan Tanzania Timor-Leste (g7+)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Zambia		Tonga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Viet Nam West Bank and Gaza Strip	<i>Mexico*</i> Montenegro Montserrat Namibia Nauru Niue Palau <i>Panama*</i> Peru Serbia Sey Chelles South Africa (BRICS) St. Helena St. Kitts-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ines Surinam <i>Thailand*</i> <i>Tunisia*</i> <i>Turkey*</i> Uruguay <i>Venezuela*</i> Wallis and Futuna
--	--	--	---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IDPS, 2010; OECD, 2012b

셋째, 모든 지표의 이행 이후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성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결과중심의 부산파트너십 공동원칙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이행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주체들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통하여 MDGs 및 Post-MDGs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global light, country focused, 그리고 공동화와 차별성을 둔 부산파트너십 지표를 아래 [그림 3]과 같이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림 3]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수원국을 분쟁 및 취약국, LICs 중심, 그리고 UMICs 중심의 수원국으로 차별화 하여 각 그룹별 맥락에 맞는 개발협력 지원을 고려하고, [그림 6](제8장)에 정리된 것과 같은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OECD, 2012d). 그리고 [그림 3]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BRCIS 중심의 신흥공여국은 선진공여국과 구분하여 ‘참여 옵서버(participant observer)’의 지위를 부여하여 부산파트너십의 주체로서 지표 개발논의 및 이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ECD, 2012f). 또한 필요에 따라서 신흥공여국은 UMICs 수원국으로서 부산파트너십 이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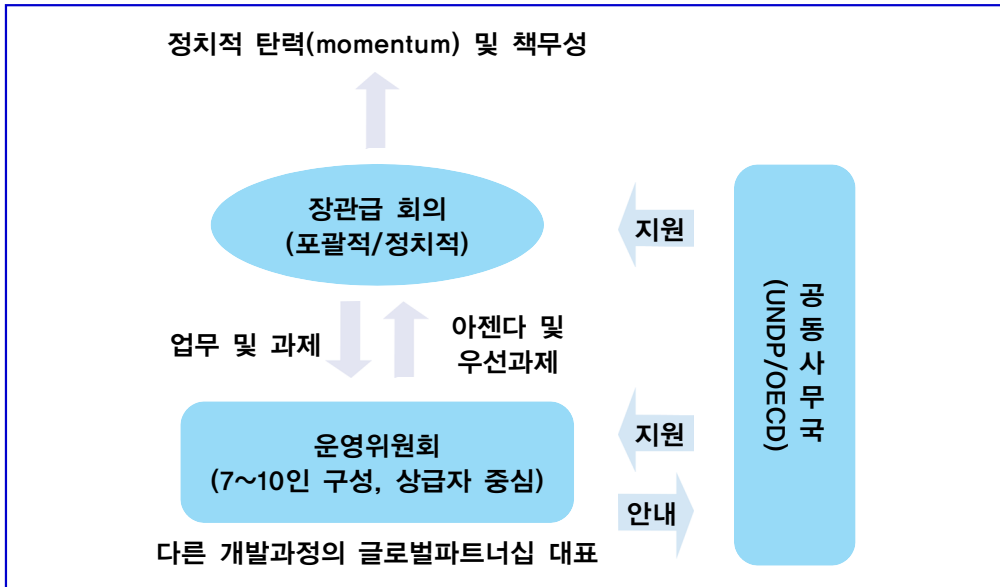
[그림 3] 부산파트너십 공약 이행 메커니즘



출처 : 저자 작성

[그림 3]은 부산파트너십에서 부각되고 있는 남남 및 삼각협력 그리고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민관협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래 [그림 4]에 제시된 PBIG에서 제안된 운영위원회 구성이 수원국, 공여국, 다자기관, 시민사회, 의회,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부산파트너십이 추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OECD, 2012d). 참고로 [그림 4]는 PBIG을 통해 제안된 Post-Busan 글로벌파트너십의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PBIG 참여 국가들은 [그림 4]의 체제안을 바탕으로 각국의 장관들이 정치적으로 부산파트너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그림 4] Post-Busan 글로벌파트너십 체계(안)



출처 : OECD, 2012d: Figure 1

마지막으로, 파리선언 지표의 해석이 국가별로 상이했다는 점을 상기하여, 지표설정 이후 각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국가별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상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2012년 6월에 발표될 합의된 지표와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국제사회의 부산파트너십 지표 발표 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²⁴⁾

24) 2012년 6월 부산파트너십 지표가 발표된 후,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서 부산파트너십 지표의 분석 및 이행 방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8. 부산파트너십 이행 예상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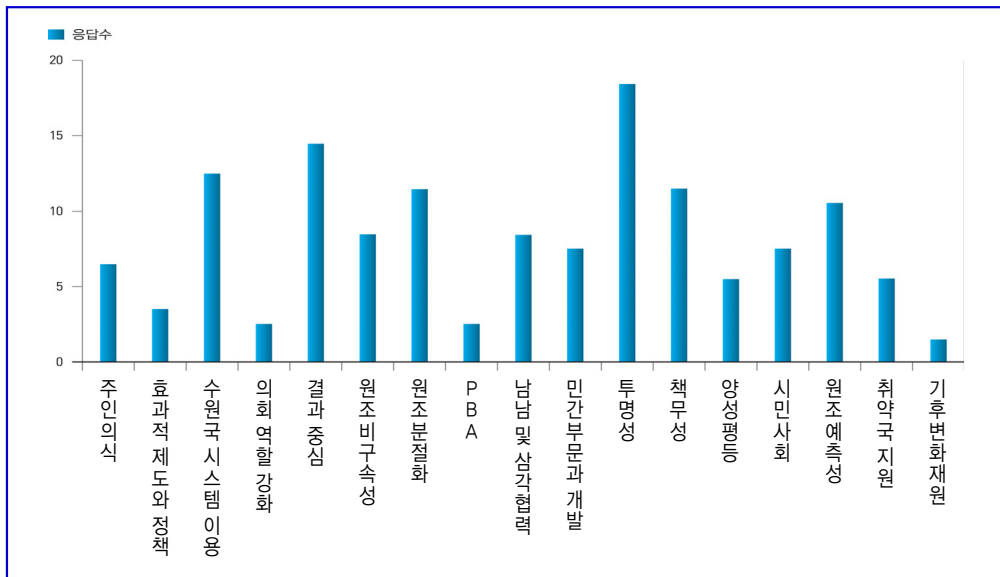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 과정은 별도의 명료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PBIG 참여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2012년 2월말에 열린 제1차 PBIG 회의 이후 OECD와 UN으로 이루어진 공동사무국([그림 4] 참고)이 PBIG 참여국에게 지표개발을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월 중순 취합한 답변을 정리하여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로 회람한 후, 4월초 제2차 PBIG 회의에서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와 지표 설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²⁵⁾ 참고로 지표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논의는 5월 중순에 열리는 제3차 PBIG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PBIG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질문지는 ‘1)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 국가 및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 및 행동방안에 대한 선택, 2) 각 국가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계획에 있는 부산파트너십 이행과 관련된 활동 파악, 3)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글로벌차원과 국가차원의 연계 및 차별화 여부’의 총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지표설정 과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설문문항 중 첫 번째 질문이었던 ‘글로벌차원에서 각 국가 또는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 및 행동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결과를 참고하였다 ([도표 1]). 설문에 응답한 국가 또는 기관은 총 25개였으나, 그 중 NEPAD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한 국가 및 기관은 총 24개이다.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한 국가 또는 기관은 최대 5개의 공약 또는 행동방안을 선택하도록 안내되었으나 5개 이상 응답한 국가들도 있었다.

제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국 및 기관들은 제2차 PBIG 회의에서 핵심지표를 글로벌차원의 지표로 기준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맥락에 맞는 세부지표를 국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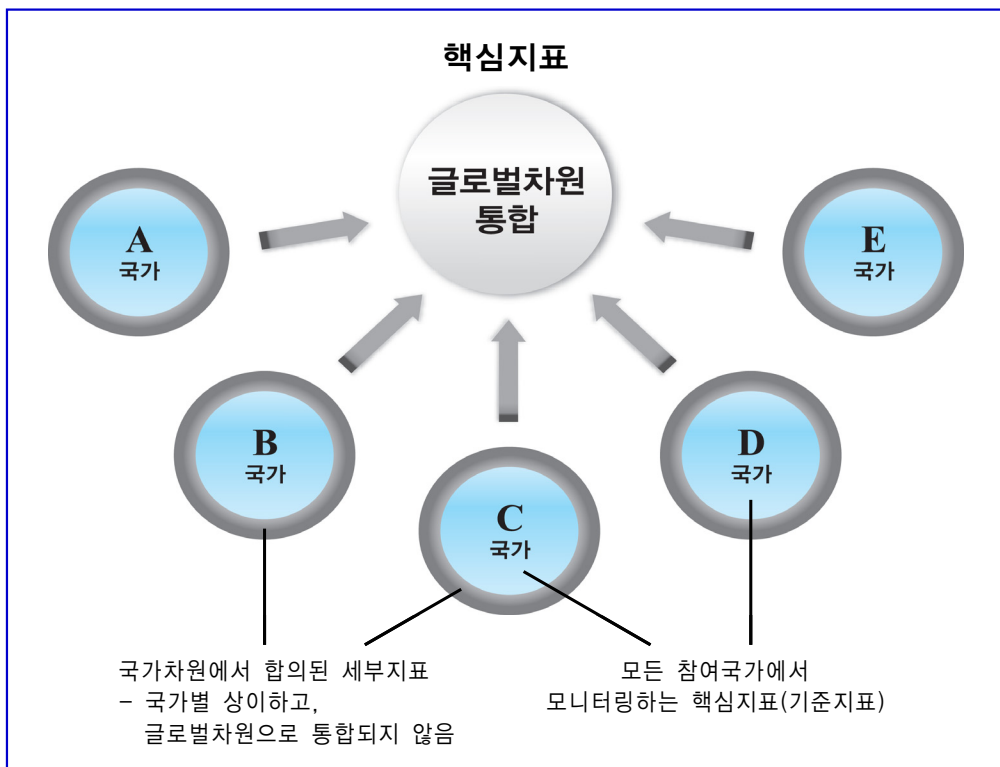
25) 본 연구는 제1차 회의 이후 한국정부(외교부)의 질문지 답변 작성에 이용되었으며, 제2차 PBIG 회의가 열리기 이전 연구를 마무리함으로써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견 제시 과정에 활용되었다.

[도표 1] 제1차 PBIG 글로벌차원의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2c

[그림 5] 부산파트너십 글로벌지표와 국가지표 차별방안



PBIG 설문결과는 응답국가 또는 기관이 부산결과문서의 공동원칙, 주요공약,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의 준위에 대한 구분없이 항목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PBIG 지표개발 작업반은 설문조사 이후 협의문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준위별로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PBIG 작업반은 공동원칙은 배제하고 주요공약별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을 정리하였다 ([표 8] 참고).

[표 8] 제2차 PBIG 회의 논의를 위해 제안된 글로벌지표

주요공약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임성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제18항 b)
	모든 국가에서 상호평가 검토 노력 (제18항 d) / 모니터링 과정 프레임워크 및 상호책임성 촉진 합의 (제35항 a)
	상호평가 검토를 위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참여 (제18항 d)
	원조비구속성 (제18항 e)
	수원국 시스템 이용 (제19항 a)
	수원국 시스템 미사용에 대한 이유의 투명성 (제19항 b)
	정책결정을 위한 성별데이터 활용 노력 (제20항 a)
	개발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 하는 시민사회 역할을 위한 환경조성 (제22항 a)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책임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여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에 의한 이행 (제22항 b)
	투명한 공공재정관리와 원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재원 이용 개발활동의 정보 공개 (제23항 a-b)
	정보공개와 전자공개 기준 이행 (제23항 c)
	3년-5년 원조 중기예측성 (제24항a)
	합의된 일정에 충실한 원조지출 (제24항) ²⁶⁾
남남 및 삼각협력	원조분절화를 감소한 개발협력 제공 (제25항)
	(글로벌지표로 개발할지, 아니면 ‘상호평가 검토’ 참여 등을 통해 남남 및 삼각협력을 지원할지 논의 필요)
민간부문과 개발	민간투자 및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규제적 환경 개선 (제32항 a)
	민간부문의 개발정책과 전략수립 및 이행과정 참여 (제32항 b)

출처 : OECD, 2012e: Table 1 중 일부발췌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PBIG 2차 회의를 위해 제안된 항목들은 협소하고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자칫 파리선언과 같은 기술적 지표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4개의 원조효과성 심화공약과 4개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이후 주요 공약)²⁷⁾을 4대 공동원칙을 중심으로 재배치 한 후, 2) 각 주요공약별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을 부산결과문서에 최대한 충실하여 재분류 하였으며, 3) 각 세부공약 및

26) OECD PBIG 협의문서 원문에는 ‘제25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상 제24항인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24항으로 정정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27) 부산결과문서에서는 공약과 행동방안에 대한 명료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결과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 중 원조효과성 심화공약과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은 ‘주요공약’으로, 그 세부항목들은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바이다.

행동방안을 글로벌차원과 한국의 국가차원으로 구분하여 지표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단, 이 과정에서 지표선택을 위한 정형화 된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으나, 파리선언의 한계점 분석에서 논의된 사항과 부산결과문서 및 BB 분석의 내용을 고려, 외교부 및 KOICA 내부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간담회를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 PBIG 회의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사회의 동향 반영, 기타 관련문서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본격적인 지표 개발에 있어서 우선 제4장과 제5장의 분석을 토대로 부산파트너십의 주요공약을 4대 공동원칙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 제시된 각 공동원칙에 따른 행동방안([표 4])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공동원칙별 주요공약과 세부공약을 [그림 6]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주인의식 공동원칙

- ▶ 우선 주인의식 공동원칙은 민주적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주요공약의 세부공약 중 ‘의회’와 ‘시민사회’에 관한 세부공약을 주인의식 공동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 결과중심 공동원칙

- ▶ [표 4]에서 정리했듯이 부산결과문서는 결과중심 공동원칙을 위한 행동방안 중 결과중심의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역량강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한 노력 강화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주요공약의 세부공약 중 ‘결과중심의 원조강화’와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이용’을 결과중심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정리하였다.
- ▶ 다만, 수원국 시스템 이용이 파리선언에서는 원조조화의 세부항목으로 제시된 데 반하여 (제3장 [표 2] 참고) 부산파트너십에서는 결과중심 공동원칙에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부산파트너십의 4대 공동원칙 및 주요공약의 구성이 파리선언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파트너십의 공동원칙과 관련 세부공약의 연관성은 부산결과문서에 제시된 내용에 충실하여 재해석 및 재배치 할 필요가 있다.
- ▶ [그림 6]을 보면 분쟁 및 취약국과 재난에 취약한 국가지원 부분을 결과중심 공동원칙에 해당하는 세부공약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과 재난 취약국을 위한 공조가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한 노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4] 참고). 사실상 ‘분쟁 및 취약국 개발촉진’과 ‘재난복원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한 공조’는 4대 공동원칙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분쟁 및 취약국 개발촉진이 취약국의 국가역량 강화와도 관련이 있고, 재난복원 및 취약성 감소 역시 재난에 취약한 국가의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에 재난복원을 포함하여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한 노력 강화와 연계될 수 있다. 특히 분쟁 및 취약국의 경우 제5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는 MDGs 달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도 직접적 연결이 되는 세부공약이다.

●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공동원칙

- ▶ 이 공동원칙에 해당하는 세부공약은 표4에 나와 있듯이 남남 및 삼각협력이며, 그 외 부산파트너십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 다만, 의회와 시민사회도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을 위한 주체들이기 때문에 주인의식 공동원칙이 아닌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정리될 수도 있으나, 의회와 시민사회 세부공약의 내용이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고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부공약은 주인의식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 공동원칙

- ▶ 우선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주요공약의 세부공약 중 양성평등 부분은 [그림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무성 메커니즘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세부공약은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다만, 부산파트너십의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노력은 MDGs 목표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과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MDGs는 교육과 여성고용 및 국외 여성의식 비중에 중점을 두었고 부산파트너십은 제20항에 나와 있듯이 성별 구분 데이터와 책무성 메커니즘에 양성평등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세부공약은 투명성 공동원칙에 포함하고, 대신 정책결정을 위해 성별 데이터를 구분하여 공개하는 항목을 강조하여 부산파트너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주요공약에 해당하는 세부공약들은 모두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정리한다.

- ▶ 부패근절 세부공약은 투명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재원은 일관성, 투명성, 예측성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된 세부공약이므로 투명성 및 상호책임무성 공동원칙의 세부공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할 점은 부산결과문서 제35항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부산파트너십 지표는 Post-MDGs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PBIG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산파트너십 지표가 MDGs 등의 국제 이행목표와 아젠다 및 이니셔티브와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OECD, 2012e & 2012f). 즉, PBIG 회의 참가자들은 부산파트너십이 Post-MDGs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부산파트너십 지표가 MDGs 후속으로 이어지는 더 큰 의미의 국제개발 프레임워크 기준에 적합하고 그러한 프레임워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2012e).

[그림 6]에서 부산 4대 공동원칙 중 ‘주인의식’과 ‘결과중심’은 원조효과성 심화를 위한 원칙이고,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은 부산파트너십에서 새로 등장한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을 위한 원칙이며, ‘투명성 및 상호책임무성’은 원조효과성 심화와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 모두를 포함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6] 부산파트너십 공동원칙별 공약28)

주인의식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중 '주인의식'	21. 의회 및 지방정부 역할 강화 - 개발과정에서의 의회역할 강화 공약 이행 심화 - 하위국가차원에서의 참여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 22. 시민사회 역할 강화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남남 및 삼각협력	31.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 삼각협력 이용확대 - 남남 및 삼각협력 성공사례 및 시너지효과 이용 촉진 - 남남협력 주제간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 개발 - 남남 및 삼각협력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지원
결과중심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중 '결과'	18. 결과중심의 원조 강화 - 수원국 제도 및 정책강화 노력 - 투명한 현장중심의 공동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및 성과물넷폼 - 모니터링 및 통계역량강화 이행 - 상호평가 검토 심화 - 원조 비구속성 강화 19.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강화 및 이용확대 (수원국 시스템 전체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 및 지원)	투명성 및 상호 책무성	민간부문과 개발	32.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민간부문 역할강조 - 민간부문 대표/관계자 참여 / PPP 포함 민간부문 개발협력 활동정책 및 규제적 환경보장 - 개발정책 및 전략의 기획과 이행단계의 민간분야 참여확대 - 무역을 위한 원조(AIT) 장려 - 개발과 사업성과의 상호강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기관 대표/관계자 참여 장려
분쟁 및 취약국 개발촉진		26. 분쟁 및 취약국(g7+ 중심)의 New Deal 이행을 통한 MDGs 달성 노력 지원 - PSGs 지원 - 집중(FOCUS) : 취약국 참여, 수원국 주도, 수원국 소유의 새로운 방법 추구 - 신뢰(TRUST) : 투명성 강화, 수원국 시스템 사용을 위한 위험관리, 국가역량 강화, 원조예측성 향상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주인의식, 결과 그리고 책무성 중 '책무성'	20.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노력 심화 - 정책결정을 위한 성별 데이터의 충분한 활용 - 책무성 메커니즘에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 목표 통합 - 개발노력의 모든 면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고려(address)
재난복원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한 공조		27. 재난관리조치와 증폭복원 인프라 및 사회보호 시스템을 위한 투자	부패 및 불법적 효률방지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23. 정보공개 및 전자공개 방식 활용 (OECD DAC 및 IATI 정보공개 기준) 24. 원조 중기예측성 강화 25. 원조채널 분절화 감소 및 확산역제
			기후변화 재원	부패 및 불법적 효률방지	33. 부패근절과 불법적 효률방지를 위한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과 같은 국제공약의 충실한 이행
				기후변화 재원	34. 효과적 기후재원과 넓은 의미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관성, 투명성, 예측성 강화 노력 - 수원국 국가개발계획의 부분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정책 지원 지속 / 기후재원의 투명한 지원과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지원 및 모니터링 보장 - 개발효과성에 대한 교환공유 지속 / 넓은 의미의 개발협력이 기후재원 혁신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

출처 :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PBIG 회의에서 중요시 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도표 1]과 [표 8]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부산결과문서의 18항, 19항, 20항, 22항, 23항, 24항, 25항, 32항이 글로벌지표로써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이 글로벌지표가 되기에는 제한적 수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부산파트너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중 글로벌차원으로서의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별적하여 글로벌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부공약을 글로벌지표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글로벌목표(Goal)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4대 공동원칙별 주요핵심이 되는 글로벌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28) 각 세부공약 및 행동방안에 표시된 숫자들은 부산결과문서의 해당 조항 번호를 뜻한다.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부산결과문서 제18항)

-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세부공약은 ‘① 수원국 제도 및 정책강화 노력, ② 수원국 현장중심의 공동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및 성과플랫폼, ③ 모니터링 및 통계역량강화, ④ 상호평가 검토, ⑤ 원조비구속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표 1]과 [표 8]에서와 같이 PBIG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이 하위항목들을 다소 기술적으로 세분화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의 지표가 Post-MDGs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을 벗어난 결과중심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이 ‘결과중심의 원조강화’는 글로벌목표로써 제시될 필요가 있다.
- ▶ 이와 같은 글로벌목표를 중심으로 공여국의 경우 PBIG 논의에서 중요시 된 ‘원조비구속성 비율’을 글로벌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글로벌지표로 개발하면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흥공여국의 경우 원조비구속성은 국가지표로 별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 수원국의 경우에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글로벌지표로 제시하는 바이며, 이는 파리선언 이행시 미흡했던 수원국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과정을 지속하는 의미와 함께 결과중심의 원조를 위해 중요한 수원국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수원국 시스템 이용 (부산결과문서 제19항)

- ▶ 수원국 시스템 이용은 파리선언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결과문서는 제19항을 통해 ‘수원국 시스템 강화 및 이용 확대’가 수원국의 효과적 제도 구축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제4장 및 [그림 6] 참고).²⁹⁾ 그러나 수원국 시스템 이용은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가장 기술적인 지표 중 하나였으며, 특히 조달시스템 이용은 목표설정조차 쉽지 않았다 (제3장 참고). 따라서 수원국 시스템 이용은 수원국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 이를 위해 우선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를 글로벌

29) 효과적 제도 구축은 원조효과성 심화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논의되었다 (제4장 및 제5장 참고). 또한,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세부공약의 첫 번째 항목에서도 수원국 제도 및 정책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6] 참고).

목표로 하여,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지원’을 공여국의 글로벌지표로 개발하고자 한다. 수원국의 경우, 파리선언의 이행과정을 지속하는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글로벌지표로 개발하고자 한다.

●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부산결과문서 제20항)

- ▶ 비록 이 세부공약이 8대 BB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일부 주체들은 ‘양성평등과 개발에 관한 부산공동행동계획(Busan Joint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을 채택하여 Post-Busan 공약으로써 양성평등 의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성평등 부분은 PBIG에서도 범분야 이슈로써 글로벌지표로 논의중에 있으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MDGs 목표 3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세부공약의 내용 중 성별 데이터 활용 부분을 정보공개 부분과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노력은 수원국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로 한국의 경우, KOICA는 2011년 11월부터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립 시 국가 양성평등 영향분석 및 양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는 등 수원국의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사업 전부서). 특히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부산파트너십에서 별도로 모니터링 되지 않더라도 이후 Post-MDGs와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부산결과문서 제21항)

- ▶ 부산결과문서에서 의미하는 의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는 수원국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항목이다. 특히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정부의 참여 및 책무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4장 참고).
- ▶ 따라서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강화’를 글로벌목표로 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파리선언에서 제시되었던 ‘수원국의 구체적인 NDS 수립’을 글로벌지표로써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시에 수원국 국가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표로써 ‘의회의 NDS 수립과정 참여비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의 메튜화). 이는 모든 수원국에서 의회를 NDS 수립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PBIG 회의에서 이루어진 지표개발시 수원국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수원국의 요청에 의거한다.

●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부산결과문서 제22항)

- ▶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시민사회의 역할은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파트너십은 시민사회, 특히 수원국의 시민사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산총회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해 시민사회는 빠질 수 없는 개발협력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역할강화는 수원국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민사회의 NDS 수립과정 참여비율’을 수원국 국가지표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의회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를 NDS 수립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수원국 여건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여국의 수원국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수원국 시민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시민사회 스스로의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 따라서 이미 역량이 잘 갖추어진 시민사회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시민사회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원국 시민사회의 경우 국제 시민사회 기관들이 수원국 시민사회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역할강화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조성은 주체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보공개 및 전자공개 방식 활용 (부산결과문서 제23항)

- ▶ [표 8]에서와 같이 투명성 부분은 정보공개, 원조 중기예측성, 원조분절화가 모두 해당되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노력을 위한 성별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세부공약이 지표로 설정되거나 모니터링 방법에 포함되면 결국 파리선언과 같은 많은 수의 지표들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조 정보공개 비율’을 ‘투명성 강화’의 글로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지표에 포함시키고, 원조 중기예측성과 원조분절화 세부공약은 공여국 상황에 따라 국가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조 중기예측성 (부산결과문서 제24항)

- ▶ 원조 중기예측성은 아크라행동강령에서 이미 2013년까지 이행하도록 합의된 바 있다 (제4장 참고).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향후 3~5년간 원조예산의 공개는 정부차원의 원조예산 공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부공약은 한국차원의 국가지표로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단, 만약 PBIG 회의에서 협소한 단위의 지표설정 논의가 지속된다면 원조 중기예측성은 글로벌지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 원조분절화 (부산결과문서 제25항)

- ▶ 이미 국제사회는 부산결과문서를 통해 2012년 말까지 원조분절화 감소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2013년까지 PBA, 공여국 원조활동의 분업, 공동 프로그램 및 협력을 포함한 수원국 주도의 조율된 업무처리 활용을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다 (제4장 및 [그림 6] 참고). 따라서 ‘원조분절화 감소 비율’은 글로벌지표로써 개발될 수도 있으나, 그 이행방법이 다양하고 공여국별 상황에 따라 이행 참여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조분절화 감소 비율’은 국가지표로 제시하여 국가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부산결과문서 제32항)

- ▶ 제5장의 민간부문 BB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산파트너십은 특히 2015년 MDGs 달성을 위해 원조를 넘어선(beyond aid) 원조 외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민간부문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확대’를 글로벌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 ▶ 이러한 글로벌목표 이행을 위해서 ‘ODA 대비 PPP 참여 비율’을 글로벌지표로 개발함으로써 원조 외 재원인 PPP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PPP의 인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를 예로 하여 기업의 단위 원조사업 당 기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PPP로 인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 비율은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 ▶ KOICA는 현재 PPP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과의 CSR을 중심으로 단위 원조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KOICA의 PPP 사업은 한 프로그램당 기업과 KOICA가 평균 50대 50으로 기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관협력실).

● 분쟁 및 취약국(g7+ 중심)에 대한 New Deal을 이용한 지원 (부산결과문서 제26항)

- ▶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공여국 개발협력 활동에 있어서 수원국을 그룹별로 차별화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3 참고). 국제사회는 특히 분쟁 및 취약국의 경우 New Deal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New Deal 이용 지원은 New Deal에 찬성하는 공여국에 한하여 국가지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다만, 분쟁 및 취약국의 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원조재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므로 (분쟁 및 취약국의 경우, 원조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g7+ 그룹을 중심으로 이 국가들의 국가역량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New Deal에서 중요시하는 PSGs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및 제5장 참고).

● 수원국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의 재난복구 노력 포함 (부산결과문서 제27항)

- ▶ 부산결과문서에서는 작은섬들(small islands)과 같은 개도국과 취약한 상황을 자주 겪는 국가들의 재난상황 복구노력을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전략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이는 수원국, 특히 재난에 취약한 수원국 상황에서 국가지표로 개발될 수 있는 세부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부공약은 재난에 취약한 수원국의 선택에 의한 국가지표로 제안하고자 한다.
- ▶ 그러나 부산결과문서에서 재난에 취약한 국가의 재난관리 조치와 충격복원 인프라 및 사회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여국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여국은 재난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지원전략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부산결과문서 제31항)

- ▶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은 남남 및 삼각협력 확대를 위해 부산파트너십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제5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부산파트너십의 남남 및 삼각협력은 아크라행동강령과 비교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이를 중심으로 성공사례 연구 및 상호학습 그리고 국가역량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남 및 삼각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신흥공여국들은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 참여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OECD, 2012e). 따라서 이 세부공약은 글로벌지표에서는 제외하지만 국가지표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다만, 남남 및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 및 상호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지식공유 및 상호학습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여국의 입장에서 수원국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pivotal) 역할을 하는 신흥공여국이 수원국 파트너와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부패근절과 불법적 흐름방지를 위한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국제공약 이행 (부산결과문서 제33항)**

- ▶ 부패근절 세부공약은 그 자체가 유엔반부패협약 또는 OECD 뇌물방지협약과 같은 국제공약과 중복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제사회는 PBIG 회의를 통해 부산파트너십의 지표설정과 이행은 MDGs를 비롯한 국제공약 및 이니셔티브들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OECD, 2012e & 2012f). 따라서 이 세부공약은 부산파트너십 지표 설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효과적 기후재원과 넓은 의미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관성, 투명성, 예측성 강화 노력 (부산결과문서 제34항)**

- ▶ 기후재원과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파리선언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지표로의 개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제5장 참고). 현재 공여국들은 MDGs와 Rio+20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ODA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국제협력단, 2012a),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시 고려해야 할 ‘개도국의 국가개발계획의 필수부분으로의 국가 기후변화 정책과 기획에 대한 지원 지속, 그리고 기후재원의 투명한 지원’과 ‘수원국 시스템을 통한 지원 및 모니터링 보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제4장 참고). 따라서 이 세부공약의 제5장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국제적 논의를 거쳐 Post-MDGs 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파트너십 지표로는 제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표 9]와 같이 4대 공동원칙별 글로벌목표, 글로벌지표, 국가지표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의 제9장에서는 본 장에서 제시된 예상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9] 부산파트너십 이행 예상지표(안)

4대 공동원칙	글로벌 목표	글로벌 지표	국가지표 (수원국 경우, 지표의 메뉴화 가능)
주인 의식	•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강화	• (수원국) 수원국의 구체적인 NDS 수립	
			• (수원국 - 예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NDS 수립과정 참여비율
결과 중심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 (공여국) 원조비구속성 비율	• (신흥공여국) 원조비구속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여부
		• (공여국)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	
		• (신흥공여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 (공여국)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신흥공여국 - 국가맥락에 따라 선택) - 수원국 시스템 역량 강화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원국)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확대		• (공여국 - New Deal 찬성의 경우)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지원
			• (수원국 - 예시)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에 재난복원 조치 포함
		• (공여국) ODA 대비 PPP 참여 비율 (PPP 인정기준 : 원조비율 중 기업이 50% 이상인 경우 - 비율은 조정가능)	
투명성 및 상호 책무성	• 원조투명성 강화	• (공여국) 원조 정보공개 비율	• (공여국 - 한국의 예) 지식공유를 위한 사업제공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삼각협력) (지식의 전달이 아닌 공유 및 신흥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 학습 역량강화)
		• (수원국) 원조 정보공개 비율	• (수원국/신흥공여국 - 예시)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확대 (남남협력) - 신흥공여국의 경우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국가
			• (공여국 - 한국의 예) 원조분절화 감소 비율

출처 : 저자 작성

9.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모니터링 방법

국제사회는 PBIG 1차 회의 이후 Post-Busan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해 다음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OECD, 2012f).

● 부산파트너십 이행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고려사항

- ▶ 국가차원의 모니터링과 수원국 역량 및 시스템 강화
- ▶ 세부적인 국가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차원 모니터링의 융통성 제고, 그리고 글로벌차원 지표에서 옵션메뉴 제공
- ▶ 기존의 정보와 분석법 최대한 활용, 그리고 정성적(qualitative) 모니터링 방법과 정량적(quantitative) 모니터링 방법 모두 이용
- ▶ 부산결과문서 제35항 준수, 그리고 행동변화(behavioral change)와 이행결과(outcome) 모두 평가
- ▶ 부산지표 이행 모니터링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식교환 및 상호학습 장려

PBIG 협의문서에 따르면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의 핵심은 1) 융통성, 2) 결과 중심을 위한 ‘행동변화’ 촉구, 그리고 3) ‘정성적 평가법’의 포함이라 할 수 있다. 즉, 파리선언의 모니터링 평가가 기술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량적 평가’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PBIG 회의를 통해서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은 글로벌지표와 국가지표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글로벌지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반면 국가지표는 국가별 개별적으로(rolling basis) 모니터링 하는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기구의 역할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 접근법을 강화하여 국가 모니터링에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OECD, 2012e).

위와 같은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제8장에서 제안된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표 10]과 [표 11]을 통해 파리선언과 QuODA의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표 10]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관련 파리선언 지표 모니터링 방법

지표	모니터링 방법	부산지표
2a.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 PFM 시스템 (수원국)	• CPIA* 평가 (1~6점, 각 단계 0.5점) – 13번 항목 ‘예산 및 재정관리의 질’ ① 정책 우선순위와 연계된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유무 ② 예산이 예측가능하며 통제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 효율적인 PFM 시스템 유무 ③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회계 및 재정보고 유무	수원국 시스템 이용
2b.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수원국)	• JVPS** 평가 (A~D 등급) – 12개 항목별 원점수 합산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A~D 등급에 맞추어 표기	
5a. 수원국 PFM 시스템 활용 (공여국)	• CPIA 5점 이상 수원국의 경우 PFM 시스템 활용, 3.5~4.5점 수원국의 경우 수원국 내 공여기관 90%의 PFM 활용 • 다음의 PFM 시스템 활용 인정기준 3개 중 1개 이상 준수한 경우 수원국시스템 활용 원조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 수원국 예산집행 (and/or) 재정보고 (and/or) 회계감사절차 활용 원조규모 평균치/정부부문에 대한 총 ODA 집행규모x 100(%) • PFM 시스템 활용 인정기준 – 국가예산집행절차 : 다음의 4개 중 3개 이상 준수 ① 공여국 제공의 재원이 수원국 입법부가 승인한 연간예산에 포함될 것 ② 공여국 제공의 재원이 수원국 예산집행절차(Budget Execution Procedure)에 종속될 것 ③ 공여국 제공의 재원이 기존 수원국 국고시스템 (Established Country Treasury System)을 통해서 처리될 것 ④ 공여국 제공 재원을 위해 별도의 은행구좌 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가재정보고절차 : 다음의 2개 기준 모두 준수 ① 공여국의 재정보고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원국에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요구하지 않음. ② 수원국에게 수원국 국가재정보고제도에 의거하여 준비된 재정보고의 제출만을 요구함. – 회계감사절차 : 다음의 기준 중 ①과 ②는 모두 준수, ③과 ④ 중 1개 이상 준수 ① 공여국 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수원국 고등감사기관 (Supreme Audit Institution)에 의해 실시 ② 수원국에게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③ 수원국 고등감사기관에서 제시하는 것과 상이한 절차 또는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 ④ 공여국 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해 수원국 고등감사 기관에게 감사주기(Audit Cycle) 변경을 요구하지 않음.	

5b. 수원국 공공조달 시스템 활용 (공여국)	- JVPS A등급 수원국의 경우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B등급 수원국의 경우 수원국 내 공여국의 90%가 현지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 수원국 공공조달 절차 활용규모/정부부문에 대한 총 ODA 집행규모x100(%)	
8. 원조 비구속화 (공여국)	- 양자원조 비구속화 비율 - 비구속성 원조 인정대상 ① 투자프로젝트 ② 물자지원 ③ 현금지원 및 (수원국) NGO에 대한 현금지원 ④ 투자관련 기술협력	결과중심 원조강화 중 원조 비구속화
9. 공동 업무처리 또는 절차 사용(공여국)	- 직접예산지원 및 기타 공여국 지원 등 총 PBA를 기반으로 집행된 원조 비중/총 ODA 집행규모 - PBA 인정기준 : 다음의 4개 기준 모두 준수해야 함. ① 공여국의 지원 프로젝트/프로그램은 수원국이 주도하는 국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일 것 ② 단일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예산구조를 사용할 것 ③ 보고, 예산, 자금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의 4개 시스템 중 2개 이상에 대한 공여국 절차 및 협력에 대한 조정 및 조화방식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프로그램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에 있어 ③ 프로그램 계획, ③ 프로그램 시행, ③ 자금관리, ③ 모니터링 및 평가 중 2개 이상에서 수원국의 시스템을 사용할 것	원조 분절화 중 PBA
11. 결과중심 프레임워크 (수원국)	- IDA*** 성과중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평가 (1~5점) - 다음의 3개 분야 측정 ① 생성된 정보의 질 ②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 ③ 정보가 국가 내 모니터링과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용되는 정도	결과중심 원조강화 중 성과관리 프레임 워크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OECD, 2008b; 한국국제협력단, 2008; 박수영 외, 2009

* CPIA: 세계은행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이후 CPIA)

** JVPS: OECD DAC 조달시스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on Procurement System, 이후 JVPS)

*** IDA: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후 IDA)

파리선언 지표 중 ‘수원국 시스템 이용’, ‘원조비구속성’,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PBA’가 예상지표의 세부내용들과 관련있는 지표들이고, 이들은 또한 QuODA 지표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QuODA는 제6장 [표 6]에서와 같이 원조투명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부산파트너십 예상지표 관련 QuODA 지표 모니터링 방법

지표	모니터링 방법	부산지표
8) 비구속성 원조 비중	비구속 원조액/총 ODA 지출액	결과중심 원조강화 중 원조 비구속화
13) 수원국 시스템 활용	$\Sigma r [(PFM \text{ 시스템을 통한 원조지원액/정부부문에 대한 총 원조규모}) + (\text{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원조지원액/정부부문에 대한 총 원조규모})]/2$	수원국 역량강화 중 수원국 시스템 이용
23) 프로그램형 원조 지원	PBA 지원금액/총 원조규모	원조분절화 중 PBA
24) IATI 가입여부	IATI 가입여부	정보공개 및 전자공개 방식 활용
25) IATI 데이터 보고 기준 이행	(평가기준 2012년 상반기 출판예정)	
26) 프로젝트명 및 내용 보고	데이터에 보고된 주요 필드(field) 입력수/주요 필드 총 입력수	
27) 프로젝트 상세내용	Log (상세내용 입력 데이터의 글자수/상세내용 총 입력수)	

출처 :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Birdsall and Kharas, 2010 & 2011

* CPA : 국가프로그램원조 (Country Programmable Aid, 이후 CPA)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리선언 뿐 아니라 QuODA의 지표 모니터링 방법 역시 다소 기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부산파트너십의 지표 모니터링은 이러한 기술적이고 정량적인 방법 뿐 아니라 정성적 모니터링 방법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8장에서 제시된 예상 글로벌지표와 한국중심의 국가지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행결과(outcome)만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닌 ‘행동변화’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PBIG 논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KOICA 차원의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정부 민관협의회 및 KOICA 내 관련부서 담당자들과의 협의 및 간담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였다.

9.1. 글로벌지표 모니터링 방법(안)

●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강화

- ▶ 우선 ‘수원국의 구체적인 NDS 수립’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은 파리선언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즉, 전체 수원국 중 NDS를 소유한 국가의 비율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참고로 파리선언에서는 전체 수원국 중 75%가 NDS를 소유하도록 목표를 정했으나, 52%의 수원국만이 NDS를 수립하는 이행결과를 보였다 (OECD, 2011a). 따라서 이 목표율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행하도록 할 수 있겠다.

- ▶ 수원국의 ‘의회 및 시민사회의 NDS 수립과정 참여비율’은 NDS를 수립하는 수원국이거나 기존 NDS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 수원국 전체 중 수립 또는 개정과정에 의회 및 시민사회를 참여시킨 수원국의 비율을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 ▶ 다만, 제8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여국의 경우 수원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더 많은 자발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KOICA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시민사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에 있다 (민관협력실). 그러나 KOICA의 시민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한국 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므로, 수원국의 시민사회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원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글로벌목표를 위해 제안된 지표는 공여국의 경우 ‘원조 비구속성 비율’이고 수원국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우선 공여국의 경우 파리선언 지표 모니터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조비구속성 비율을 측정하고, 수원국의 경우 역시 파리선언의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다만, 수원국들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에 있어서 공여국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공여국의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된 모니터링 양식 이용 비율을 모니터링 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로 파리선언에서는 공여국의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통일된 모니터링 및 보고양식 이용을 의무로써 제시는 하였으나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다.
- ▶ 한국의 경우, 2011년 ODA 사업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2012년 시범 운영중이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이다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 이 과정에서 평가분야는 국별, 분야별, 주제별 등으로 다양화 할 예정이며, 수원국과의 공동평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수원국과의 공동평가 과정에서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수원국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 신흥공여국의 경우 원조비구속성 지표는 선진공여국과 비교하여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여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흥공여국의 경우 원조비구속성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조비구속화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원조시스템은 법적제도 및 기관제도의 변화 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흥공여국의 경우 정성적 평가법을 도입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신흥공여국들이 글로벌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신흥공여국의 원조비구속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노력 여부를 마커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 또한 비단 수원국 뿐 아니라 신흥공여국들도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과연 이 국가들이 이 지표에 대한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 참여에 동의할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는 모든 국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지표는 신흥공여국에게도 글로벌지표로 제시하되, 이행여부는 통일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여부를 마커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 ▶ 본 연구는 이 글로벌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여국의 경우 수원국의 시스템 역량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은 공여국의 경우 수원국내에서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참여비율을 평가함으로써,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 지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국의 경우 재정시스템은 CPIA 평가법을, 조달시스템은 JVPS 평가법을 이용하여 현 단계에서 한단계씩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KOICA는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지원방안으로 수원국 전자조달시스템 강화사업을 고려중이다 (조달계약팀).
- ▶ 신흥공여국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신흥공여국이 수원국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공여국의 입장에서 수원국의 시스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신흥공여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수원국의 입장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과 ‘우정관계’를 중심으로 ‘공동협력’을 하고 있다는 정책적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여국의 자격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Lim, 2010). 그러나 선진공여국의 경우 중국의 시스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공재정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하고, 수원국의 시스템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글로벌 지표가 아닌 국가지표로써 제시하고, 신흥공여국의 맥락에 따라 공여국 또는 수원국 입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

- ▶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ODA 대비 PPP 참여비율’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표의 모니터링 방법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있어서 원조규모에 비해 원조 외 재원인 민간부문의 참여가 개발 협력 성과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전체 원조지출액 대비 PPP 사업에서 기업이 기여하고 있는 비율을 측정하거나, 원조 외 재원인 PPP의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조투명성 강화

- ▶ 부산파트너십은 OECD DAC 뿐 아니라 IATI의 정보 공개기준을 강조하고 있다.³⁰⁾ IATI는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제사회가 IATI 정보공개 기준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1) DAC 공여국 및 다자기관의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보고와 2) 수원국 중심의 원조정보관리시스템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후 AIMS) 보고로 양분화 되어 있는 원조정보관리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원조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 우선 CRS와 IATI의 관계를 살펴보면, CRS를 통해 DAC 공여국 및 다자기관들은 과거 1년 동안의 원조지출액 보고하고 있는 반면, IATI는 수원국 회계연도와 일치하는 원조정보의 미래데이터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CRS는 1년에 한차례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IATI는 1년에 적어도 네 차례의 보고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DAC CRS가 정량적 데이터 중심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인데 반하여, IATI는 정량적 데이터 뿐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도 수집하여 각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온라인 카탈로그의 기능을 하도록 의도하고 있다.³¹⁾ CRS 보고서 정량적

30) 본 장의 IATI에 대한 내용은 IATI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aidtransparency.net>)와 IATI에 보고된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http://www.iatiregistry.org>)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31) 공여국 원조 프로젝트 정보는 공여국의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의 링크도 포함한다.

데이터 뿐 아니라 프로젝트명과 내용과 같은 정성적 정보도 참고사항으로 함께 보고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자가 OECD 온라인 통계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 ▶ IATI가 벤치마킹 하고있는 정성적 데이터 공개방법은 특히 현재 약 50여개 수원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AIMS다. AIMS는 수원국이 원조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개발활동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로마선언 이후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원조관리플랫폼(Aid Management Platform, 이후 AMP) 또는 공여국 원조 데이터베이스(Donor Assistance Database, 이후 DAD)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AMP는 OECD, 세계은행, UNDP가 Development Gateway와 함께 개발하였으며, 초기에는 주로 엑셀파일로 관리되었으나 현재 AMP 2.0 버전으로 발전되어 온라인상으로 정보 보고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AMP를 이용하여 원조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수원국은 약 20개국이다. DAD는 Synergy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AMP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³²⁾ IATI가 AIMS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AMP나 DAD 등 수원국에 따라서 이용하는 원조데이터관리시스템이 다르고 그 기준도 다양하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IATI가 CRS와 비교하여 더 많은 그리고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분산되어 있는 AIMS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CRS와 AIMS를 통합하려는 시도도 사용자 이용의 편리성 제고와 원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 하지만 IATI의 정보공개 방법이 1년에 네 차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온라인을 통하여 공여국 현지사무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여국 현지사무소의 정보제공 역량 및 기준, 재량권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문서데이터의 경우 비영어권 국가들의 문서의 영어번역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데이터 정보공개에 있어서 공여기관 본부의 CRS 보고와 현지사무소의 AIMS 보고가 결국 AITI에서도 본부 및 현지사무소의 정보를 양분화(two-track)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IATI 정보공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현재 IATI 웹사이트의 정보검색이 IATI가 주장하는 것만큼 그리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32) IATI 및 AIMS 등과 같은 정보공개기준과 공개방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국제 원조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원조투명성 평가를 위하여 IATI 가입 및 IATI 기준에 의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IATI의 가입이 논의되었으며, [표 11]에 나오는 QuODA 지표 24와 25의 경우 원조기관 투명성 평가에서 IATI 가입여부와 IATI 데이터 보고기준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IATI의 정보공개 기준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비영어권 국가들에게는 IATI의 정보공개 기준 준수가 큰 부담으로써 이는 파리선언과 같이 선진공여국 중심의 모니터링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 ▶ 따라서 공여국의 투명성 강화 이행 모니터링은 전체 공여국 중 IATI 가입 공여국의 비율을 측정하되, 옵서버로 가입한 공여국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옵서버로 가입한 공여국의 경우 IATI 논의에 함께 참여하고 IATI의 기준이 완성되면 정회원으로 재가입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IATI에 일단 옵서버로 가입하여 국제 정보공개 기준 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며, 정회원으로의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할 것이다 (외교부).
- ▶ 수원국의 경우, AIMS 사용이 수원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원조투명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 : CDDE, 2009; Monye et al., 2010; Development Gateway, 2012), 수원국의 AIMS 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³³⁾ 단, 많은 수원국이 AIMS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IATI의 분석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방법에 AIMS 정보공개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AIMS의 사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AIMS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해 공여국 현지사무소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동시에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조 데이터 공개에 있어서 성별데이터 구분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원국의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3) 2012년 3월에 열린 AMP 모범사례 워크숍을 통해 수원국 스스로가 다양한 원조데이터를 관리하여 AMP를 통해 활용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Development Gateway, 2012).

9.2. 국가지표 모니터링 방법(안)

다음의 국가지표 모니터링 방법은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남남 및 삼각협력의 경우 글로벌지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이들 국가의 부산파트너십 모니터링 참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흥공여국들의 국가차원 모니터링을 지역기구 차원에서 통합 또는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 국가의 부산파트너십 이행 및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지원

- ▶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지원은 New Deal에 참여하는 공여국 중 New Deal의 내용을 고려한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전략 소유 국가비율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KOICA에서는 INCAF 뿐 아니라 New Deal을 고려한 분쟁 및 취약국 지원전략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정책총괄팀).

●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확대 (삼각협력)

- ▶ 공여국의 지표로 제시된 ‘지식공유를 위한 사업제공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이행 모니터링 방법으로 본 연구는 공여국들이 지원사업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프로그램명 및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지식의 단순 전달이 아닌 공유 및 수원국의 상호학습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원사업 규모 또는 비율의 측정이 아닌 정성적 접근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적 접근법을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할 때 객관적 평가 또는 목표치 제시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지식공유를 위한 사업제공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서 공여국의 기존 연수사업이 아닌 ‘수원국 간의 상호학습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수원국 상호학습 기반마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명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 ▶ 나아가 본 연구는 이 지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표달성 정도를 정성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수원국의 필요 및 ‘내용에 충실한’ 상호학습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원조분절화 감소

- ▶ 부산결과문서는 원조분절화를 위한 방안으로 PBA 및 공여국 원조활동의 분업, 공동 프로그램 및 협력을 포함한 수원국 주도의 조율된 업무처리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원조분절화 BB에서는 SWAp을 PBA와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하였고, JAS 또는 공동프로그램도 원조분절화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참고). 그러나 이러한 원조분절화 감소 방법이 파리선언 이행과정에서 효과가 저조하거나 공여국 이행이 미비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상 수원국 내 원조분절화를 감소를 강조하고 파리선언에서 공여국의 조화를 강조했던 이유는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 ▶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국 현장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공여국-수원국 파트너십 그룹(Donor-Recipient Partnership Group, 이후 DRPG)’을 활성화하고, 공여국들이 DRPG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과제의 이행정도를 측정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시에 PBA 이용과 공동프로그램 사업시행 여부의 모니터링을 ‘옵션메뉴(menu of options)³⁴⁾’로 제안하여 공여국별 자발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다. PBA 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파리선언의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여국별로 PBA 원조비율을 파리선언의 목표였던 66%까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 또는 DAC CRS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별 프로그램 가능 원조(country programmable aid, 이후 CPA)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국가별로 현재 CPA 비율을 향후 약 10%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PA 비율을 측정하는 경우 국가별 또는 원조기관별 CRS 보고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Birdsall et al., 2012).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된 예상지표별 모니터링 방법을 표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흥공여국의 경우 ‘참여 옵서버’(제7장 참고)의 자격으로 공여국을 위한 지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원국 해당 지표의 모니터링에 부분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4) PBIG이 제시하는 옵션메뉴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지표의 메뉴식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수원국이 국가맥락과 상황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표 12] 부산파트너십 이행 예상지표 모니터링 방법(안)

4대 공동원칙	글로벌 목표	글로벌 지표	모니터링 방법	국가지표 (수원국 지표의 메뉴화)	모니터링방법 (옵션메뉴 중 선택 가능)
주인의식	•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강화	• (수원국) 수원국의 구체적인 NDS 수립	• NDS 소유 국가수/전체 수원국수		
				• (수원국 - 예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NDS 수립과정 참여비율	• NDS 수립 또는 개정과정에 의회 및 시민사회를 참여시킨 국가수/NDS 수립 또는 개정한 전체 수원국수
결과중심	•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 (공여국) 원조비구속성 비율	• 비구속원조액/총 ODA 지출액	• (신흥공여국) 원조비구속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여부	• 원조비구속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노력 여부 (마커이용)
		• (공여국)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지원	• 수원국 내 통일된 모니터링 양식 이용회수/전체 원조사업 모니터링 실시회수 (현 단계에서 10% 이상 확대 목표)		
		• (신흥공여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 통일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여부 (마커이용)		
		• (수원국)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 IDA 성과중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평가 (한 단계 상승 목표)		

결과중심	•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 (공여국)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공동프로그램 참여 국가수/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공동프로그램 전체수	• (신흥공여국 - 국가맥락에 따라 선택) - 수원국 시스템 역량 강화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국가맥락에 따라 선택) - (옵션메뉴)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공동프로그램 참여 국가수/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 공동프로그램 전체수 - (옵션메뉴) CPIA 및 JVPS 평가 (한 단계 상승 목표)
		• (수원국)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CPIA 및 JVPS 평가 (한 단계 상승 목표)		
				• (공여국 - New Deal 찬성의 경우)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지원	• New Deal에 의거한 분쟁 및 취약국 역량강화 전략 소유 국가수/New Deal 참여 전체 공여국수
				• (수원국 - 예시)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에 재난복원 조치 포함	•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에 재난복원 조치 포함 국가수/재난에 취약한 수원국수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확대	• (공여국) ODA 대비 PPP 참여 비율 (PPP 인정기준 : 원조비율 중 기업이 50% 이상인 경우 - 비율은 조정가능)	• PPP 기업지원액/총 ODA 지출액 (원조 외 재원인 PPP의 활용도 측정)		

4대 공동원칙	글로벌 목표	글로벌 지표	모니터링 방법	국가지표 (수원국 지표의 메뉴화)	모니터링방법 (옵션메뉴 중 선택 가능)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 (공여국 - 한국의 예) 지식공유를 위한 사업제공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삼각협력) (지식의 전달이 아닌 공유 및 신흥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학습 역량강화)	• 지식공유 지원사업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프로그램명 및 내용 공개 • 각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표달성 여부 공개
				• (수원국/신흥공여국 - 예시)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확대 (남남협력) - 신흥공여국의 경우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국가	• 지식공유 및 상호학습 기반마련 프로그램명 및 내용 공개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	• 원조투명성 강화	• (공여국) 원조 정보공개 비율	• IATI 가입 국가수/전체 공여국수 • 성별 데이터 구분 국가수/전체 공여국수		
		• (수원국) 원조 정보공개 비율	• AIMS 정보공개 국가수/ 전체 수원국수 • 성별 데이터 구분 국가수/ 전체 수원국수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		• (공여국 - 한국의 예) 원조분절화 감소 비율	• DRPG 논의 과제 이행수/ 총 DRPG 논의 과제수 • (옵션메뉴) PBA 원조액/총 ODA 지출액 (66% 달성 목표) • (옵션메뉴) 공동프로그램 이용 원조액/ 총 ODA 지출액 • (옵션메뉴) CPA 원조액/총 ODA 지출액 (2011년 비율 기준, 10% 향상 목표)
-----------------------	--	---	---

출처 : 저자 작성

* 신흥공여국은 전 부분에서 '참여 옵서버'의 지위로 자발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 가능

9.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부산총회 이후 2012년 6월을 목표로 한 부산파트너십 지표 개발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KOICA 및 한국정부의 지표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 개발협력 관계자들의 개발효과성 및 부산파트너십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의 부산파트너십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조 효과성, 개발효과성, 개발협력 효과성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파리선언 지표 전략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후 부산결과문서와 8대 BB를 분석하여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을 위한 방향과 기본원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대부분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예상지표 제안 및 모니터링 방법 수립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 내 관련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이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부산파트너십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포럼 및 국내 민관협의회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아크라행동강령 이후 중요한 국제 개발협력의 파트너가 되어 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PBIG 등 부산파트너십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사회의 부산파트너십 지표개발에 대한 동향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협의 과정에서 KOICA의 의견이 반영된 지표개발 전략을 외교부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파리선언 이행결과와 부산결과문서 및 BB의 분석을 통해 부산파트너십 지표는 선진공여국 중심의 논리를 탈피한 수원국과 신흥공여국의 현실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의 경우 g7+ 중심의 분쟁 및 취약국, 신흥공여국을 제외한 UMICs, 그리고 그 외의 수원국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공여국의 수원국 지원 전략 및 정책 수립시 차별화하여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흥공여국의 경우 기존의 BRICS 뿐 아니라 터키, 태국, 헝가리 등의 새로운 신흥공여국도 포함한다.

국제사회의 지표개발 과정은 PBIG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은 결과중심 뿐 아니라 공여국의 행동변화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정성적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PBIG 참여국들은 글로벌지표와 국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MDGs와 같은 국제목표 또는 국제 아젠다와 중복되는 지표설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PBIG 국가들은 특히 신흥공여국들의 부산파트너십 이행 및 모니터링 참여가 가능한 지표개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PBIG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표개발은 협소하고 세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파리선언의 기술적 측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대 공동원칙별 글로벌목표를 제시하여 부산파트너십 지표가 기술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수원국 및 공여국이 부산파트너십 이행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총 10가지 글로벌지표를 제안하였고, 그 중 5개 지표는 선진공여국, 1개의 지표는 신흥공여국, 나머지 4개 지표는 수원국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차원의 지표를 위해서 본 연구는 PBIG에서 논의된 수원국을 위한 지표의 메뉴화 방법을 도입하여 수원국별 니즈(needs)와 우선순위 그리고 상황에 맞는 지표의 선택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여국을 위한 국가지표는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은 글로벌지표 5개와 국가지표 2개, 즉 총 7개의 지표에 대한 이행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각 예상지표별 모니터링 방법도 제안하였는데, 일부는 파리선언의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하였고, 일부는 부산파트너십이 추구하는 정신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표의 모니터링 방법 중 일부는 옵션메뉴를 통하여 국가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신흥공여국의 경우 참여 옵션서의 지위를 통하여 부분적이고 자발적인 또는 시범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 중 결과중심의 공동원칙 부분을 예로 들면, 우선 이 공동원칙 이행을 위하여 ‘결과중심의 원조강화’와 ‘효과적 제도구축을 위한 수원국 시스템 역량강화’를 글로벌지표로 제시하였다. 이 글로벌목표들 중 결과중심의 원조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공여국의 경우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글로벌지표로 제안하였다. ‘원조비구속성 비율’ 지표의 모니터링 방법은 전체 ODA 규모 중 비구속원조 비율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예상지표가 2012년 6월 최종 국제합의에 의한 부산파트너십 최종지표로 제시될 경우, 한국 ODA의 원조비구속성 강화는 무상원조 뿐 아니라 유상원조도 이행 및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이는 KOICA의 원조비구속성 강화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지표별 이행전략 또는 정책제언은 현 시점에서는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아직 지표가 개발 중인 현 단계에서 이행에 대한 제언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전략제시 및 정책적 제언은 2012년 6월 최종 지표 및 모니터링 방법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후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써 한국정부 및 KOICA의 부산파트너십 이행 및 목표달성을 위한 ‘부산파트너

십 지표의 분석 및 이행방안 연구’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Post-MDGs 목표달성을 위해 부산파트너십 이행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포함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박수영, 조아영 (2009).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체제 평가연구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이현주 (2011).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와 도전 과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2호. 한국국제협력단.
- 임소진 (2011a).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과와 한국 ODA의 과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3호.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1b). 부산총회의 결과와 KOICA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 국제개발협력 2011년 4호.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8).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문 이행평가 설문조사 참여설명서. (내부문서)
- _____ (2012a). 기후변화 ODA 현황 및 분석. KOICA 기후변화대응실. (내부문서)
- _____ (2012b).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의의와 포스트 부산 체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 Post-부산 이행체제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발표자료 초안. KOICA 카메룬 사무소.

해외문헌

-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10). Development Effectiveness Review 2009 Report. Manila, ADB.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10). The Tunis Consensus: Targeting Effective Development,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Tunis, AfDB.

- _____ (2011). Annual Development Effectiveness Review 2011. Tunis, AfDB.
-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0). Annual Review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 Improving Basic Services for the Poor.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 Birdsall, N. and H. Kharas (2010).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 _____ (2011). Measuring the Quality of Aid: QuODA Second Edition. Washington, D.C., CGD.
- Birdsall, N., H. Kharas and R. Perakis (2012). 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2009: Is Aid Quality Improving?. Washington, D.C., CGD.
- Bogota Statement (2010). Towards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The High Level Even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
- Booth, D. (2008). Aid Effectiveness after Accra: How to Reform the Paris Agenda. Briefing Paper.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 CDDE (Capacity Development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 Better Data, Better Aid? Practical Guidance Note on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2006). A Review of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CIDA's Grants and Contributions. Quebec, CIDA.
- Cox, A. and A. Motter (2010). Making Aid Work: Towards Better Development Results. Practical Guidance for Parliamentarians on the Role of Parliaments in Development Effectiveness. First Edition. Commissioned by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Capacity Development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DDE) Facility.

-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2010).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Practice. Edited August 19, 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Available at:
<http://www.danidadevforum.um.dk/en/menu/ParisInPractice/ParisInPractice/ParisAndCrossCuttingIssues/News/DevelopmentEffectivenessInPractice.htm>) [Accessed: 5 January 2012]
- De Renzio, P. (2008). Practical Challenges for Delivering on Paris: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Presentation to the ODI Seminar, 4 April 2008.
- Doucouliaqos, H. and M. Paldam (2006). "Aid Effectiveness on Accumulation: A Meta Study." *Kyklos* 59(2): 227–254
- Foresti, M., D. Booth and T. O'Neil (2006). Aid Effectiveness and Human Rights: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London, ODI.
- Hyden, G. (2008). "After the Paris Declaration: Taking on the Issue of Power." *Development Policy Review* 26(3): 259–274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9). Annual Review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IDB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2008). Development Effectiveness Framework. Washington D.C., IDB.
- _____ (2010). Development Effectiveness Overview 2008–2009.
- IDPS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2010). Dili Declaration: A New Vision for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 _____ (2011a). A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_____ (2011b). The Monrovia Roadmap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 Kindornay, S. (2011). From Aid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A Working Paper. The North-South Institute.
- Lim, S. (2010). Chinese Aid Policy and Practice in Africa: Issues to Address in Tanzania. Conference Paper. British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_____ (2011a). Aid Effectiven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weden, the United Kingdom, South Korea and China in Tanzania. Doctoral thesis. Manchester, University of Manchester.
- _____ (2011b). Western Inspired Paris Declarat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ing Paper No. 4. Manchester: Centre for Organisations in Development.
- Lundberg, A. and A. Palmgren (2008). The Paris Declaration - a Paradigm Shift at All Levels? An Examination of the Swedis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ole in the Development Aid Policy Area. Thesis. Linkopings Universitet.
- McGann, J. G. (2012) The Global Go To Think Tanks Report: the Leading Public Policy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onye, S., E. Ansah and E. Orakwue (2010). "Easy to Declare, Difficult to Implement: The Disconnect Between the Aspirations of the Paris Declaration and Donor Practice in Nigeria." Development Policy Review 28(6): 749-770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Paris Declaration Aid Effectiveness. Paris, OECD.
- _____ (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5. Paris, OECD.
- _____ (2008a). A Progress Report o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 _____ (2008b). Better Aid: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 _____ (2008c). Compendium of Donor Reports o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 Vol.1: Summary of Emerging Trends.
- _____ (2009). 2009 DAC Report on Aid Predictability Survey on Donors' Forward Spending Plans 2009–2011, Paris, OECD.
- _____ (2010).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 Transforming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 _____ (2011a).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 _____ (2011b). Building Block on Effective Institutions and Policies, Concept Note.
- _____ (2011c). Building Block on Managing Diversity and Reducing Fragmentation, Concept Note.
- _____ (2011d).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1e). Climate Change Finance Building Block – Climate Change Finance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Pursuing the Effective Delivery of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Finance based on Common Principles, Concept Note.
- _____ (2011f). Fragile States Building Block –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Concept Note.
- _____ (2011g).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Development Building Block, Concept Note.
- _____ (2011h).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Building Block – Achieving, Measuring, Reporting and Accounta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Country Results and Accountability Agreements, Concept Note.

-
- _____ (2011i).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Building Block –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Horizontal Partnerships. Concept Note.
- _____ (2011j). Transparency Building Block – Pushing the Boundaries on Transparency for Better Predictability, Engagement and Accountability. Concept Note.
- _____ (2012a). First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Meeting Note Taken). Paris, OECD.
- _____ (2012b). DAC List of ODA Recipients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stats/daclist>)
[Accessed: 6 March 2012]
- _____ (2012c). PBIG Initial Consultation on the Scope of Post-HLF4 Monitoring – Online Questionnaire Responses Received and Revised as of 12 March 2012.
- _____ (2012d). Proposed Functions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Consultation Paper.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2012)4. Paris, OECD.
- _____ (2012e). Proposed Scope and Approach to the Global Monitoring of Busan Partnership Commitments and Actions. Consultation Paper.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2012)5. Paris, OECD.
- _____ (2012f). Revised Draft Summary Record. First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M(2012)1/PROV/REV1. Paris, OECD.
- _____ (2012g). Working Arrangements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dentifying Key Characteristics.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2012)2. Paris, OECD.
- Open Forum (2010). 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 Quibria, M. G. (2004). Development Effectiveness: What Does Recent Research Tell Us?. OED Working Paper No. 1, Manila, Asia Development Bank.
- Reality of Aid (2010).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owards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Quezon City, The Reality of Aid Management Committee.
- Stern, E. (2008). Thematic Study on the Paris Declaration, Aid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Koe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 Tarp, F., Ed. (2000). Foreign Aid and Development: Lessons Learn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London, Routledge.
- Tomlinson, B. and R. Wanjiru (2010). Open Forum Country and Sectoral Consultations: a Synthesis of outcomes, Towards a Framework for SCO Development Effectiveness.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 TT-SSC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2011). Good Practice Paper: Towards Effective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TUDCN (Trade Union Development Cooperation Network) (2011a). Towards a Comprehensive Paradigm for Decent Work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rade Union Position and Messages for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TUDCN Development Papers 2011/2.
- _____ (2011b). Trade Union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3). Development Effectiveness Report 2003: Partnerships for Results. New York, UNDP.
-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2008). Gender Equality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New York, UNIFEM.

-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2). List of Key Donors – as of February 2010. Last updated in 2012.
(Available at: <http://www.unodc.org/unodc/en/donors/donorlist/index.html?ref=menuaside>)
[Accessed: 7 March 2012]
- Wathne, C. and E. Hedger (2009). Aid Effectiveness Through the Recipient Lens: The Impact of Aid Depends on Donor Behavior and Procedures Going Beyond Paris and Accra. London, ODI.
- Wood, B. (2011). Was the Paris Declaration Effective? – The Official Verdict: The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Summary Presentation of the Synthesis Report at ODI Public Event, 15 June 2011, London, ODI.
- Wood, B., J. Betts, F. Etta, J. Gayfer, D. Kabell, N. Ngwira, F. Sagsti and M. Samaranayake (2011). The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Phase 2 Final Report. Copenhagen, DIIS.
- Yi, I., O. Cocoman, H. Rhee and Y. Chung (2011). Korean Experience with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ectiveness. (2nd Edition) Mak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ective: Lessons from the Korea Development Experience. Seongnam-si, KOICA.

연구자료 ODA연구 2012-05-072

KOICA 개발정책포커스 10호

발 행 2012년 4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 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화인쇄사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SN 2093-2111

